현안분석 2007-

법령용어 연구 07-04

선거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학선 · 강현철 · 정상우



선거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election related law

연구자: 전학선(한국외대 법대 교수)
Jeon, Hak-Seon
강현철(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정상우(부연구위원)
Jeong, Sang-Woo

2007. 10. 31.



국문요약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한 포괄적인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선거관련법령은 선거참여자인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법령용어는 물론 문장도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선거에 있어서 관련자인 모든 일반국민이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선거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거 관련법령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 문가들이 아니라 선거관련자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 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선거관련 자와 일반국민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 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선거 관련 전문가는 물론 참여자와 일반국민의 선거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

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선거 관련법령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여 그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선거 관련법령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선거관련 법령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1차적으로 선 거와 직접 관련된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 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 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 였음을 먼저 밝힌다.

※ 키워드 : 법령용어, 선거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알기 쉬운 법령, 법 언어학, 입법학, 법령용어순화

Abstract

The election related law need t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because of incomprehensibility to cause expression chinese and japanese. Therefore, this report studies on a question and a scheme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election related law classify a field.

This field classify terminology of the organization, a personnel management administration,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bo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election related law. In particular, this report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 provisions in election related law. This suggestion make the good use of research material for establish and revision in law.

As well, This suggestion hope to study a synthesis under conditions of insufficience opinion about election related law. This suggestion hope to make an opportunity of comparison and examination about opinion of another reciprocity.

※ Key words: election related law,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terminology, election law

목 차

국 문 요 약
Abstract ····· 5
I. 서 론9
Ⅱ. 공직선거법 개관13
Ⅲ. 법령순화방안15
1. 한자의 순화 15
2. 일본식 용어의 순화16
3. 문장의 순화17
1) 주어가 생략된 경우17
2) 능동과 피동의 순화17
3) 조사의 순화 17
4) 명사구 문장의 순화18
5) 문어체 문장의 순화18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21

I. 서 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법규범의 적용 아래서 형성·유지된다. 매일의생활에서 하나 하나가 모두 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활동을 할 때 모두 법규범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되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특히 인간관계속에서 충돌 혹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규범이다. 따라서 규범은 인간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러한 규범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인간사회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고 국가에었어서 국민들에게 행동규율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용어라는 것도 전문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른 일반적인 용어와 표현들처럼 쉽게만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쉽게 서술될 필요는 있다.

법은 결국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성문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언어를 떠나서는 실정법적인 각종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추출되는 것은 전부 언어라는 방적기 위에서 행해진다. 언어는 법학자 유일의 도구이며, 법률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다. 법학은 언어의 학문의 하나로서, 모든 실정적 제정법은 언어에 의한 구속을 받으며, 법개념이나 법관념이 존재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이며, 또한 언어 속에 있다. 즉 법은 말해지는 것이며, 이는 판결 즉 법의 선언 또는 평결이나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법도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자신을 표현한다. 법은 사회와 더불어 역사가 오래되며 사회

는 언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인간사회가 인간의 사회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체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이 있는 곳의 전제가 되는 「사회」는 그 자체 나아가 「언어」를 전제로 하거나적어도 그 「사회」는 「언어사회」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와 법의 결부는 문학작품보다 더욱 밀접하다. 그 이유는 언어는 보통으로는 사념을 표현하는 것이나, 법은 각종 개념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념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나 법개념은 엄밀한 언어적 한계를 지니고있다. 즉 법언어는 규범적 기호이며 이는 서술적 기호와는 달리 언제나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당한 질서상태와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언어와 법의사이에는 대단히 엄밀한 결부가 있으며, 일방이 타방에 상호영향을 미친다. 실정법(법률)은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표현되며, 그러한의미에서 법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일대체계라고 이해할 수있다.)

따라서 성문화 된 법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잘 못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는 법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법의 규율대상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 확한 단어사용과 정확한 문장구조, 명확한 표현 등이 필요하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표현은 간략·명료하게 할 필요 가 있으며, 또한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명확하게 법을 정비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법률의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의 면에서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일본식 표현,

¹⁾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 ,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11-12면.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 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 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의 정 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 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 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목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 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형 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령 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 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로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

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 생활을 둔감하게 하고있다. 일상 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2)

특히 올해에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많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법조문을 보고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여야지만 공직선거법이 생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잘못 사용된 단어라든가 혹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일본식 표현 등을 지적하여 순화하고자 한다.

²⁾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3-15면.

Ⅱ. 공직선거법 개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공직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교육의원, 교육감 등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시·군·구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시·군·구의 장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하여 기본법은 공직선거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여러 번 바뀌면서 관련 법률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1994년 3월까지는 각각의 선거에 대하여개별 법률로 규정하였었다. 즉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선거법이 있었고,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선거법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이 있었고, 지방의회의언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있었다. 그러나 각 선거마다 단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단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일 법률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1994년 3월 제정되었다. 그 후 2005년 8월 법명을 공직선거법으로 바꾸었다. 공직선거법은 필요에 따라 자주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1007년 6월 1일 개정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7장 27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이며 제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 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Ⅱ. 공직선거법 개관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공직선거법시행령이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보면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7조 제1항도 대통령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이 입법자에게 임명방식을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이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Ⅲ. 법령순화방안

1. 한자의 순화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을 통하여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이를 섭취하 여 왔다. 그리고 학술용어, 전문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한자 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법률적인 언어의 창조도 말할 것도 없이 한학에 소양 있는 자가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한자에 의하여 원어의 의미내용을 대체로 표현한 것이나 그곳에는 단기간에 적어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되어 정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용어에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하여 한자의 사용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 자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 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법 내용을 인해하 지 못한다든가 혹은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글이나 우리 언 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 는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과 법규범 사이에 표리관계가 형성되어 법률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들로 하여금 법적 생활에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형성하게끔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한자어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는 경우에 오히려 뜻이 모호해지거나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혹은 그표현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아울러 우리나라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아래에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발 앞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와 법 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어로 서 만들어진 번역식 법률용어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 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에서와 音 讀밖에 없는 한국어에서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언어 적으로도 법이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법생활로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 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조어자의 원어이 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번역어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라는 면에 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감정과 일 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 와 '일반국민의 법 으로부터의 소외 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 정이다.3)

예를 들어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를 반드시 'の'로 연결시키며, 3번까지의 'の'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의'가 2회 이상 반복되어도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면 수식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할 것이다.

³⁾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1-12면.

3. **문장의 순화**4)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성분을 생략하더라도 쉽게 이해될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앞에 나온 문장성분이라도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국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장성분,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법조문에서의주어는 그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조문에서는 가급적 주어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능동과 피동의 표현은 법조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피동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능동은 스스로의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피동과 능동이 잘못 쓰이거나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조사의 순화

법률의 조문 중 조사가 잘못 사용된 유형으로는 부정확한 조사를 쓴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 불구하고'를 '~에 불구하고' 라고 쓰거나, 여격 조사 '~에게'를 '~에'로 쓴 경우, 주격 조사 '~이/가'를 관형격 조사 '~의'로 쓴 경우 등이 특히 빈번하다.

⁴⁾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97 면 이하 참조.

Ⅲ. 법령순화방안

법조문에서 주어는 그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 바로 주격조사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예가 많다.

법조문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의 '의'는 주격조사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의+서술어'로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주술호응은 의미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연결이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국회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빈번하다. 부정확한 주 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국회법에서도 체언형의 문체로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어 법률문 장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명사구 문장을 동사구로 바 꾸어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민법에서 주로 사용 되는 명사구 표현은 '~음을', '~리 것을', '~함에는' 등이 있다.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국회법 조문에는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문어체 문장이 눈에 많이 띤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국회법의 입법 당시의 언어습관과 이에 따른 입법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어체의 법조문은 일반국민들이 법규범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판결문과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국회법의 문체를 모범으로 하여 문어체

문장을 답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언어환경과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어체로 된 법조문은 가급적 평이하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순화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 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 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민국 / 헌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 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정히 행 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 '부정을 방지함으로써'라 표현은 더 쉽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부 정을 방지하여'로 고칠 수 있다.
- * 일반적으로 '~함을'이란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 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 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는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기여하다→이바지하다

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 [순화안] 제 2 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 '적용한다'의 주어는 '이 법'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면 '적용 한다'는 '적용된다'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제 3 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 [순화안] 제 3 조(선거인의 정의) 이 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 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 하다.

법에서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일반적으로 '~함을'이란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 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 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인이라 함은'은 '선 거인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자(者)로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말인 '사람으로서' 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마찬가지로 '자를'도 '사람을'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 4 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순화안] 제 4 조(**인구의 기준)** 이 법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 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 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에 있어서는 제15조(선거권)제2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에 따른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 는 인구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 민등록표에 따라서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 /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서는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하다.

- * '의한다'는 의미는 '따른다'는 의미이므로 '따른다'로 바꾸는 것이 더 좋다.
- * '~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
- * 법문 단서는 입안기준에 따라 순화함. 선거법에서는 단서를 '이 경 우'로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단서의 사용례로서 '다만'으로 순화함.

제 5 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 [순화안] 제 5 조(선거사무협조) 관공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 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다.

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 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 * '기타'는 '그 밖의'로 바꿀 수 있다.
- *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대안>

제 6 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 [순화안] 제 6 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 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 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V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 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③∨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 * 선거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라는 서술형을 많이 쓰고 있지만, 서 술형의 문장으로써 법문의 뜻을 매우 불확실하게 할 염려가 있다 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가능한 한 '~한다'라는 완결형 서술형으로 순화하도록 함.
- * '취하여야 한다'→'취한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 * '자(者)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말인 '사람이'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아니한다'도 '않는다'가 더 간결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않는다'로 바꾼다.
- * '행사하여야 한다'도 줄임말로 '행사해야 한다'로 바꾼다.

제 7 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 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u>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u>이 법을 <u>준수하고</u> 공정하게 <u>경쟁하여야 하며</u>,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 전하거나 이를 <u>비판·반대함에 있어</u> 선량한 풍속 <u>기타</u>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u>하여서는 아니된다.</u>

[순화안] 제 7 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려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안된다.

- * '자를(는)'은 우리 말인 '사람을(은)'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일반적으로 '~함에 있어'란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함에 있어'ㄴ,ㄴ '~ 하는데 있어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준수하다'는 우리 말의 '지킨다'는 의미이므로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바꾼다.
- * '경쟁하여야 하며'는 줄임말인 '경쟁해야 하며'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해야 하며'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고칠 수가 있겠고 또는 앞의 단어와 연결하 여 '풍속이나'로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 * '해하는'은 해롭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치는'이 더 부드러운 표 혀이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해서는 안 된다'로 고치는 것이 우리 일 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제 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 [순화안] 제 8 조(언론기관의 공정보 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 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 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 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 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 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 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 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 람과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제1항에 따른 인터 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정치적 의견 그 밖의 사항 을 보도·논평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 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 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 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 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 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 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 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 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 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 쓴다. 따라서 '기타의'는 '그 밖의'로 바꾸고 '기타'도 '그 밖의'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므로 '사람'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 정견→'정치적 의견'
- *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참여하여 대담ㆍ 토론하거나, 이에 대한 방송 · 보도는 공정하여야 한다."<대안>

제 8 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 | [순화안] 제 8 조의2(선거방송 V 심의 송법』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 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 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 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 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 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방송위원 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 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기가 끝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 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② \ 선거방송 \ 심의위원회는 방송 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에 따 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 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u>자와</u>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u>각 1인을</u> 포함하여 <u>9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의 정치적 중립성 · 형평성 · 객관 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 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 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u>우에는</u> 『방송법』 제100조(제재조 치 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 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 치 등을 <u>지체없이</u>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 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 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

③ V 선거방송 V 심의위원회의 위원 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V 선거방송 V 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 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 지와 권리구제 <u>그 밖에</u> 선거방송 의 <u>공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u> 공표한다.

⑤ V 선거방송 V 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조사하고, 선거 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u>않으면</u>,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 V 제1항 각 V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u>알리</u>고,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방송을 한 방송사<u>에게</u>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바로 명한다.

⑥ \ \ \frac{\firec{\frac}{\frac}{\frac{\frac{\frac{\frac{\frac{\frac}{\frac{\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u>지체없</u> 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심의위원회는 <u>바로</u>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⑦ V 선거방송 V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V 규칙으로 정한다.

- * '운영하여야 한다'는 더 부드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운영한다'로 고친다.
- * '자'는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으로 바꾼다.
- * '인'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명으로 바꾼다.
- * '구성한다'의 주어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이므로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성된다'로 하는 것이 맞다.
-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조사하여야 하고'는 '조사해야 하고'로 고친다.
- * '아니하다고'는 '않다고'는 으로 바꾼다.
- * '이를'은 앞의 목적어를 다시 한 번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 * '통보하다'는 '알린다'는 의미이므로 '알리다'로 고치고 '하여야'는 '해야'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므로 '통보하여야'는 '알려야'로 바꾼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명하여야 한다'는 '명해야 한다'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따라서 위 법 문에서 '및'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로 바꾼다.

제 8 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순화안] 제 8 조의3(선거기사심의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 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 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u>에 의한</u>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언론중재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언론중재 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 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기가 끝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 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

재선거<u>에 있어서는 그</u>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u>운영하여야 한다</u>.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u>자와</u> 국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u>1인</u>을 포함하여 <u>9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 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 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 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 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 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 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u>통보</u> 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 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 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 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 하여야 한다.

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한다.

② V 선거기사 V 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u>사람과</u>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u>1명</u>을 포함하여 9명 V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 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 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 라 한다]에 실린 선거기사의 공정 성을 조사하고, 선거기사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않으면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 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언론중 재위원회에 알리며, 언론중재위원 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실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사람(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 라 한다)에게 사과문 또는 정정보 도문을 실을 것을 바로 명한다.

-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u>자가</u> 제 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u>의 규정에</u>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u>있는 경우</u> 1부를 <u>지체없이</u>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u>제출하여야</u>한다.
- ⑤제4항<u>의 규정에 의하여</u> 정기간 행물을 제출한 <u>자의</u> 요구가 <u>있는</u>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 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u>에 관하여 이</u> 를 준용한다.
-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u>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언론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④ V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사람 이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V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V중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V 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 V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1부를 바로 선거기사 V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 V 제4항<u>에 따라서</u>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u>사람의</u> 요구가 <u>있으면</u> 선거기사 V 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 상을 한다.
- ⑥ ∨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 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 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u>에 준</u> 용한다.
- ⑦ V 선거기사 V 심의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u>에 필요한</u> 사항은 언론중 재위원회가 정한다.
-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의한'은 '따른'으로 바꾼다.
- * '운영하여야 한다'는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운영한다'로 바꾼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인'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명'으로 바꾼다.
- * '구성한다'의 주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므로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성된다'로 하는 것이 맞다.
- * '공정여부를'은 공정성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공정성을'로 고 치다
- * '아니하다고'는 '않다고'는 으로 바꾼다.
- * '통보하다'는 '알린다'는 의미이므로 '알리다'로 고치고, '하여야' 는 '해야'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므로 '통보하여야'는 '알려야'로 바꾼다.
- * '조사하여야'는 '조사해야'로 고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은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으로 바꾼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명하여야 한다'는 '명한다'로 바꾼다.
- * '제출하여야'는 '제출해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다'로 바꾼다.
- * '이를'은 앞의 목적어를 다시 한 번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 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 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 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 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 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 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u>또는</u>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u>날부</u> 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 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 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제 8 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 [순화안] 제 8 조의4(선거보도에 대 **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가 끝 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 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는 해당 선거방송 \ 심의위원회 또 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 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 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 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u>이나</u>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u>날로</u> 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방 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 송을, 해당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 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 에 있어서는 편집이 <u>완료되지 아</u> 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 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 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 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 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 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 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 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u>아니한</u> 때에는 <u>당해</u>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u>또는</u>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u>지체없이</u>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u>또는</u>

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u>이나</u>기사게재가 있은 <u>날로부터</u> 30일이 <u>지난</u> 때에는 <u>청구하지</u> 못한다.

②∨방송사<u>나</u>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바로 해당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 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을 협의 한 후, 방송은 청구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며, 정기간행물은 편집 이 끝나지 않은 같은 정기간행물 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 도문을 <u>게재한다.</u> <u>다만</u> 정기간행 물의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 도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48시 간 안에 해당 정기간행물이 배부 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 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에 따 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며, 그 비용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한다.

③ V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 지지 <u>않으면</u>, <u>해당</u>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 V 심의위원회<u>나</u> 선거기사 V 심의위원 회에 <u>바로</u> 회부하고, 선거방송 V 심의위원회<u>나</u> 선거기사 V 심의위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제1항·제4항 <u>내지</u> 제7항의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u>이를 준용한다.</u>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보도청구"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u>바로 해당</u> 정당 또는 후보자, 방송사나 언론사에 알린다. 다만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u>하려면</u>, 반론방송이나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은 함께 결정한다.

④ V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 의 행사) V 제1항·제4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도 준용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은 "반론보도군"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아니한'도 줄임말인 '않은'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더 부 드러운 표현이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하여야 한다'도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이를'은 앞의 목적어를 다시 한번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 * '준용한다'의 주어는 '규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더 부드럽게 이 해되므로 주어와 술어의 관계상 '준용된다'로 하는 것이 좋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제 8 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 [순화안] 제 8 조의5(인터넷선거보도 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 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 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 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 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 도 · 제공하거나 <u>매개하는</u>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 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 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 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 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 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 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 조(용어의 정의) ∨ 제7호에 따른 인 터넷신문 > 사업자 그 밖에 정치 • 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 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인터 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사 람과 이와 비슷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인터넷 / 홈페이지에 올려진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 송 · 동영상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② \ 인터넷 \ 선거보도 \ 심의위원 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 추천하는 각 <u>1인</u>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u>자를</u>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u>11인</u>이내의위원으로 <u>구성하며</u>,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u>에</u> 위 원장 <u>1인을</u>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u>에</u> 상임위원 <u>1인을</u>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권리구제 <u>기타</u>선거보도의 공정을 <u>보장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u>의</u>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

당이 추천하는 각 <u>1명</u>과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u>사람을</u>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u>11명</u>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되며</u>,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③ ∨ 인터넷 ∨ 선거보도 ∨ 심의위원 회는 위원장 <u>1명을</u> 두되, 위원장 은 위원 ∨ 중에서 <u>서로 뽑는다</u>.
- ④ V 인터넷 V 선거보도 V 심의위원 회는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V 선거보 도 V 심의위원회의 위원 V 중에서 지 명한다.
- ⑤ V정당의 당원은 인터넷 V선거보도 V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V 인터넷 V 선거보도 V 심의위원 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 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 제 그 밖에 선거보도의 <u>공정성을</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표한다.
- ⑦ V 인터넷 V 선거보도 V 심의위원 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 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 에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u>구성하는</u>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u>기</u> <u>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u>구성되는</u> 사무국을 둔다.

⑨ ∨ 인터넷 ∨ 선거보도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으로 정한다.

- * '매개하는'에서 '매개(媒介)'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를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통하여 '연결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구성하며'의 주어는 인터넷 보도심의 위원회이므로 '구성되며'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 *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 '임기는 3년이다' 로 바꾼다.
- * '호선'은 서로 뽑는 것을 말하므로 '서로 뽑는다'로 바꾼다.
-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이를'은 앞의 목적어를 다시 한번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 * '공포하여야 한다'는 쉬운 표현으로 '공포해야 한다'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구성하는'은 사무국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구성되는'을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

제 8 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 [순화안] 제 8 조의6(인터넷언론사의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 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 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 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 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 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선 거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며, 선 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으 면, 해당 인터넷 / 언론사에게 해 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②∨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 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면, 보도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안에 인터넷 / 선거보도 /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 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개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u>의 규정에 의한</u>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u>아니하는 경우</u> <u>에 당해</u>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 ③ V 인터넷 V 선거보도 V 심의위원 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바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며,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않으면 해당 인터넷 V 언론사에게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① V인터넷 V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해당 인터넷 V언론사에 반론보도의 개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V인터넷 V언론사가 제4항의 청구를 받으면 바로 해당 정당이나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등을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안에 해당 인터넷 V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한다.

⑥ ∨ 제5항에 따른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

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 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는 심의하여 각 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해당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 ✓ 언론사에 결정내용을 알린다. 다만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알 리고, 통지를 받은 인터넷 ✓ 언론 사는 바로 이행한다.

⑦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 권의 행사) \ 제1항·제4항부터 제 7항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에 어긋 나지 않으면 인터넷 \ 언론사의 선 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준용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보도청구"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으로 본다.

- * '공정여부를'은 공정성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공정성을'로 고 친다.
- * '아니하다고'는 더 부드러운 표현인 '않다고'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명하여야 한다'는 '명해야 한다'로 바꾼다
- * '이내에'는 기간 안에란 의미이므로 '안에'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경과한'은 기간이 지나간 것을 의미하므로 '지난'으로 바꿀 수 있다.
- * '통지하여야'는 알리다는 의미이므로 '알려야'로 바꿀 수 있다.
- * '이를'은 앞의 목적어를 다시 한번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 * '준용한다'는 서술어의 주어는 '규정'이므로 '준용된다'가 맞는 표현이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제 8 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 [순화안] 제 8 조의7(선거방송토론위 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 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 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 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 위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 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 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 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대담· 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 > 토 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 른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 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 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 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 만,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구・시・군∨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 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 역구 / 국회의원 / 선거구 / 단위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 운영될 수 있다.

② ∨ 각급 ∨ 선거방송 ∨ 토론위원회 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 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 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 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u>자</u> 등 학식과 덕망있는 <u>자중에서</u> 각급선 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u>자를</u> 포함하여 <u>9인</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며</u>,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u>에</u> 위원 장 <u>1인</u>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 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u>기타</u> 공정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토론회등의 업무<u>수행을 위하여 필</u> <u>요한 때에는</u> 공영방송사 또는 관 런 기관·단체<u>등에 대하여</u> 협조요 구를 할 수 있으며, <u>그</u> 협조요구 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 중에서 각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 > 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 >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③ \ '각급 \ 선거방송 \ 토론위원회 는 위원장 <u>1명</u>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V 중앙선거방송 V 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 V 토론위 원회 위원 V 중에서 지명한다.
- ⑤ V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 V 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 중앙선거방송 ∨ 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 등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공표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u>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u>성·</u>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u>기타</u>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⑧ √ 중앙선거방송 ∨ 토론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 ∨ 선거방송 ∨ 토론위원회(이하 "시・도 ∨ 선거방송 ∨ 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둔다.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u>에 필요하면</u>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 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u>에게</u> 제8항<u>에 따른</u> 사 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⑩ ∨ 각급 ∨ 선거방송 ∨ 토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으로 정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는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설치하는'은 구·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꾸며주므로 '설 치되는'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주어를 구·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 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설치·운영될 수 있다'로 고치 는 것이 옳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인'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명'으로 바꾼다.
- * '구성하며'의 주어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므로 '구성되며'로 바꾼다.
- *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간단하게 '임기는 3년이다'로 고친다.
- * '호선한다'는 우리 말인 '서로 뽑는다'로 바꾼다.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에서 소유격 '의'는 불필요하므로 생략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에 응하여야 한다'는 가능하면 지시하는 내용을 밝혀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지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전부 밝히면 법문장이

장황해질 경우에는 '~에 따라야 한다'로 쓴다. 다만, 지시하는 내용을 직접 밝히거나 '따라야 한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에 응해야 한다' 그대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보문에서도 '이에 따라야 한다'로 바꾸는 것 이 좋다.

- *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도 반복되어 어색한 느낌이 있으므로 '사무처리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 부드러운 표현이다.
- * '구성하는'은 뒤의 '사무국'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구성되는'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제 9 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 무원 <u>기타</u>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u>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u>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 사 <u>또는</u>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를 <u>하여서는 안된다</u>.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 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 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 9 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 공무원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V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한다.

- * '하여서는 안된다'는 순화된 표현이지만 행위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문장에 표시하는 것이 보다 이해를 돕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금지된다'로 순화함.
- * '기타(其他)'는 '그 밖의'나 '그 밖에'와 함께 쓰도록 하되, '그 밖 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다만, '기 타'보다는 '그 밖의'나 '그 밖에'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므로 가급적 바꾸어 쓰도록 한다. '그 밖에'에 결합된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그 밖의'에 결합된 '의'는 관형격 조사이므로, '그 밖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그 밖의'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열거되는 요소가 동사구일 때(명사구가 아닐 때)는 '그 밖에'를 쓰고, '그 밖의'는 원칙적으로 그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 쓴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하여야 한다'도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나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로고치다.

-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 | [순화안]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 **활동**) ①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 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 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한다)
 -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 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 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 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 는 단체
 -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5. 삭제
 -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 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 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이름이나 그 대표의 이름으로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할 수 없다.
- 1.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 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 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 맹을 말한다)
- 2. 법령으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 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
-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 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 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 다)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5. 삭제
- 6. 선거운동을 표방한 노동조합이 나 단체

②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u>활</u> <u>동을 함에 있어서는</u> 항상 공정한 자세를 <u>견지하여야 하며</u>,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u>아니하도록</u>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 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u>활동을 하</u> 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u>하여야 하며</u>, 그 행위가 선 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의 중지 <u>또는</u>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하는 때에는</u>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 한다</u>. ②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u>활</u> <u>동은</u> 항상 공정한 자세를 <u>유지하</u> <u>며</u>,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u>활동</u> 을 하면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 령을 <u>하며</u>,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 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u>나</u>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u>않으면</u>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명의(名義)'란 어떤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주체로서 표명되는 성명 또는 명칭을 말한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명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 법문에서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공직선거에의'에서 '에의'는 불필요한 조사이므로 빼는 것이 좋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에서 '함에'는 불필요하게 명 사형으로 문장이 되어 있으므로 '하는데'로 하는 것이 좋다.
- * '하여야 하며'는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본딧말인데, 일상생활에 서는 줄임말이 더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야 하면'로 바 꾸다
- * '하여야 한다'도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아니하도록'도 '않도록'으로 바꾼다.
- * '아니하는'도 '않는'으로 바꾼다.
- * '견지'는 굳게 지킨다는 의미이지만 '유지'로 바꾼다.
- * '유의'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마음에 둔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유의'는 '조심'으로 바꾼다.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구·[순화안]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 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 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 단을 둔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 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u>당해</u> 선거에 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 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 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 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 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u>다만</u>, 선거기간 중에는 <u>해당</u> 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 하는 각 3명을 포함한다.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u> 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 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 부정감시단원을 추천<u>하지 아니</u> <u>하거나</u> 추천한 수가 <u>3인에</u> 미달 하는 경우
-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운영<u>하는 때에는</u>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u>균형있</u>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제2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 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u>5인</u>이 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u>별도로</u> 둘 수 있다.
- ⑥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 을 할 수 있다.
- ⑦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u>대</u> <u>하여는</u>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수당</u>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V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시·군 V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수 있다.
-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 포기의사를 알려 온 경우
-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 거부정감시단원의 추천<u>이 없거</u> <u>나</u>, 추천한 수가 <u>3명에 모자라는</u> 경우
- ④∨관할∨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u>가</u>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 어 조를 편성·운영<u>하려면</u>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u>의 참여</u> 를 균형있게 보장한다.
- ⑤ V 제2항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구·시·군 V 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u>5명</u>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따로 둘 수 있다.
- ⑥ ∨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구· 시·군 ∨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⑦ \(\frac{(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수당이나 실비</u>를 지급할 수 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활동방│ ⑧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과 활동 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 규칙으로 정한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통보하다'는 '알린다'는 의미이므로 '통보하여'는 '알려'로 고친다.
- * '아니 하거나'는 줄임말인 '않거나'로 고쳐서 우리가 쉽고 부드럽 게 이해되도록 한다.
- * '~하는 때에는'은 주어와 부사구에서 '~은 ~은'이 반복되어 어색 하다. 따라서 '운영하면'으로 고친다.
- * '별도로'는 '따로'란 의미이므로 '따로'로 바꾼다.
- * '대하여는'도 '대해서는'으로 바꾼다.
- * "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 정감시단의 소속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주어가 불분명한 대표적인 법률문장으로써 주어 를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주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 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 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순화안] 제10조의3(사이버 V 선거부 정감시단) ①∨중앙선거관리위원 회와 시·도 V 선거관리위원회는 인 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 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 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 정된 보궐선거∨등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u>하여</u> 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 서는 선거의 종류·실시지역 등을 <u>감안하여</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 ③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u>후단</u>·제3항·제6항 <u>내지</u>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u>준</u> <u>용한다</u>. 이 경우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 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 일까지 각각 <u>30명</u>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 V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 · 운영한다. 다만, 보궐선거 V 등은 선 거의 종류 · 실시지역 등을 <u>고려하</u>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 ② V 사이버 V 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 ③ V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V제2항 단서 ·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 V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된다. 이 경우 "관할 V구·시·군 V선거관리위원회" 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 V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 V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 * '등에 있어서는'→'등은'
- * '감안'→'고려'
- * '자(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 말인 '사람'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인'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명'으로 바꾼다.
- * '구성한다'의 주어는 사이버정감시단이므로 '구성된다'로 바꾸어 야 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인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더 부드럽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정하는 바'라 는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 * '준용한다'의 주어는 '규정'이므로 '준용된다'가 맞은 표현이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 [순화안]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 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 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 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②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 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 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 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 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 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③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 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 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당해 신 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

- 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 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u>끝날 때까지</u> 사형·무기 또는 장 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 의 유예를 받는다.
- ② / 국회의원 / 선거, 지방의회 / 의 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서 규정 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 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 를 받는다.
- ③∨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 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u>해당</u>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가 끝

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이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날 때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이 법 제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부터 제 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까지・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부터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 '종료시까지'→'끝날 때까지'
- * '후보자의 등록이'에서 '의'는 생략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이라 하는 것이 좋다.
- * '아니하며'는 줄임말로 '않으며'로 바꾸는 것이 더 부드럽다.
- * '벌칙에 규정된'은 '벌칙에서 규정된'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 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 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12조(선거관리) ①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 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 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 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 회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순화안] 제12조**(선거관리)** ①∨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선거사무를 관 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 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② V 시·도 V 선거관리위원회는 지 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 회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취소 · 변경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해당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 리위원회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취소 • 변경할 수 있다.

-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이 법의 특별 한 규정을 제외하고
- * '통할'→'관할'
- * '처분에 대하여 ~있다'는 간단하게 '처분을 ~있다'로 고칠 수 있 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로 고칠 수 있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 [순화안]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 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 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통령선거 <u>및</u> 비례대표전국선 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 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 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이하 "비례대표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 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지 역선거구시 · 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 거, 지역선거구자치구 · 시 · 군의 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 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 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 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자 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 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 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제29조(지방의회의 원의 증원선거)제3항 또는 「선거 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

- 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 호 와 같다.
- 1. 대통령 V 선거와 비례대표 V 전국 선거구 V 국회의원(이하 "비례대 표 V 국회의원"이라 한다) V 선거 의 선거구 V 선거사무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 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 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 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 위원회
-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 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 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 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 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 치구・시・군의회 ∨ 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 라 한다)선거, 비례대표 >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 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 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제29조(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 정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u>선거구선거사무"라</u>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u>후보자</u> 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 해 선거구를 <u>단위로 행하여야 하</u> 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_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 지변 <u>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u> 능을 수행할 <u>수 없는 때에는 직근</u>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6항에 따라서 선거구∨선거
 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③ V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특히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따라 해당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에게 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V 제3항에 따라서 선거구 V 선거 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 회의 위원은 선거구 V 선거관리위 원회 V 위원의 정수에 포함하지 않 으며,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V 구·시·군 V 선거관리위원회 나 읍·면·동 V 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기능 을 수행할 수 없으면,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다른 선거관리위원회<u>로 하여금</u> 당 <u>해</u>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 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 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u>로 하여금</u> 대행하 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u>정하여야 한다.</u>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 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u>지체없이</u>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u>보고하</u>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대행하게 <u>하려면</u> 대행할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한다.

⑥ V 제5항에 따라서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 의 범위를 <u>바로</u> 공고하고, 상급선 거관리위원회에 <u>보고</u>한다.

- * '~라 함은'은 서술어가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선거구 선거사무는' 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바에 따라'는 '~ 것에 따라'로 고친다.
- *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고칠 수 있다.
- * '산입하다'는 '셈해 넣다'는 말이므로 '산입하지 아니하며'는 '셈하여 넣지 않고'로 고친다.
- * '부득이한'은 '할 수 없는'의 우리말이 더 이해하기 쉽다.
- * '직근'은 '가장 가까운'을 의미하므로 바꾼다.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 [순화안]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 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 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 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 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 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 기는 총선거에 <u>의한</u>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 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 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 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 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 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 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 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 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 임기 마 지막 날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된 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후에 실시되는 선거와 궐위에 따 른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 ②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 의원(이 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따른 전임의원의 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부터 시작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 작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와 지방 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따른 의 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 터 시작되며, 전임자나 같은 종류 의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는 전 임∨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 마지 막 날의 다음 날로부터 시작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 임 기가 끝난 후에 실시되는 선거와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

의 선거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 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 선이 결정된 때부터 <u>개시되며</u> 전임 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지 · 분할 · 합병할 때의 선거 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서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u>시작되며, 전임자</u> 나 같은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는 '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어색 하다. 따라서 '전임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의'로 고치는 것이 부드 러운 표현이 된다.
- * '개시'는 시작의 의미이므로 '시작'으로 바꾼다.
- * '실시하는'은 선거를 꾸며주는 단어이므로 '실시되는'이 정확한 표현이다
- *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을 의미하므로 '남은 기간'으로 바꾼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 * '의하여'는 '따라서'로 고친다.
- * '만료되자'는 '끝나다'로 바꿀 수 있으므로 '만료된'은 '끝난'으로 바꾼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이 있다.

제15조(**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 [순화안] 제15조(**선거권)** ① V 19세 V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u>자는</u>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u>의회의원 및 장의</u> 선거권이 있다.

-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
 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u>당해</u>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자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② V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은</u>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u>의회 V 의원</u>과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
 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 부∨작성기준일 현재 <u>해당</u>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u>사람</u>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V제1항의 선거인명부 V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V등의 작성 및 관리)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V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에서 '국민은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국민에게 ~있다'라 든가 아니면 '국민은 ~ 가진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든 가 아니면 '19세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 * '경과한'은 지났다는 의미이므로 '지난'으로 바꿀 수 있다. '경과 한'은 외국인을 꾸며주므로 '경과된'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 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 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 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 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 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 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 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 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 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 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 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 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 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 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 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 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순화안] 제16조**(피선거권)** ① V 선거 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 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 령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공무 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 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 / 작성기준일부터 계속 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 안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 상의 국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 진다. 단,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 합 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중 단되지 않는다.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 안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라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국민은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국민에게 ~있다'라 든가 아니면 '국민은 ~ 가진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국민 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19세이상의 국민 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 *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일상 생활에서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앉는다'로 바꾼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 [순화안]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 로 산정한다.

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나이는 선 거일을 <u>기준으로</u> 계산한다.

- * '연령'은 나이를 일컫는 말이므로 '나이'로 바꿀 수 있다.
- * '현재로'는 '기준으로'로 순화함.
- * '산정하다'는 '계산하다' 혹은 '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바꾼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순화안]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사람)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선거 권이 없다.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u>아니하거나</u> 그 집행을 받지 <u>아니하기로</u> 확 정되지 아니한 자
-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 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 132조(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 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 실된 자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u>않거나</u> 그 집행을 받지 <u>않기로</u> 확정되지 않은 사람
-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 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 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 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 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 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 조(알선수뢰)까지 ·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 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안은 사람(형 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 실된 사람

-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 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 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 로 선고하여야 한다.
- 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 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을 말한다.
-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한다.
- *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바꾼다.
- *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이 없다'라고 해야 정확한 퓨혀이다
- * '아니하거나', '아니하기로', '아니한' 등은 본딧말인데 일상생활에 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더 자연스러움으로 '않거나', '않기 로', '않은'으로 바꾼다.
- *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하므로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로 바꾸어야 한다.
- * '경과하다'는 '시간이 지나가다'란 의미이므로 '지나다'로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앞의 '10년을'은 '10년이'로 바꾸어야 한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포함한다'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서 느낌이 불편하다. 차라리 앞의 '사람도'를 주어로 하여 '포함된다'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 운 표현이다.

-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순화안]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사**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 당하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람)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u>사람</u>)제1 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 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 3.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바꾼다.
- *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이 없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 * '아니한'은 본딧말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더 자연스러움으로 '않은'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 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순화안]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u>당해</u> 시· 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u>당해</u> 자치 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당해</u>의원의 선거구를 <u>단위로 하여</u>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당해</u>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u>단위로 하</u> 여 선거한다. ② V 비례대표 V 시·도의원은 <u>해당</u>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 표 V 자치구·시·군의원은 <u>해당</u> 자 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 V 지역구 V 국회의원, 지역구 V 지 방의회 V 의원(지역구 V 시·도의원 및 지역구 V 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해당</u> 의원의 선거구를 <u>단위로</u>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해당</u>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u>단위로</u> 선 거한다.

- * '단위로 하여'는 '하여'라는 불필요한 설명이 이어진 것으로 생략 하여도 법문에 차이가 없음. 따라서 '단위로'로 줄여씀.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 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 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 · 도의 지역구 국회의 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 로 하다.

[순화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 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 하여 299명으로 하되, 각 시·도 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명이다.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 명이다.

- * '인으로 한다'는 불필요한 서술어가 나열된 것으로 '이다'로 줄여 씀.
- * '인'은 사람을 나타내므로 '명'으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순화안]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 지역구시 · 도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 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 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 다)마다 2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 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 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 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 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정수)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 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 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 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 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 되지 않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 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 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 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u>당해</u>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u>인</u> 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u>산정된</u> 의원정수가 16<u>인</u> 미만이 되는 광역시 <u>및</u> 도는 그 정수를 16<u>인</u>으로 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u>제1</u>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 수는 1로 본다. 다만, <u>산정된</u> 비례 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한하여 <u>해당</u>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u>명</u> 으로 한다.

③제1항<u>과</u>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u>계산된</u> 의원정수가 16<u>명</u> 미만이 되는 광역시<u>와</u> 도는 그 정수를 16 명으로 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 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계산된 비 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명 미만 인 때에는 3명으로 한다.

- * '아니하게'는 줄임말이 더 많이 사용되므로 '않게'로 바꾼다.
- * '인'은 사람을 나타내므로 '명'으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산정되다'는 '계산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산정된'은 '계산된'으로 바꾼다.
- *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하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바 꾸어야 한다.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 | [순화안]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 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 · 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 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 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 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정한다.

-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 는 7인으로 한다.
-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 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 수는 1로 본다.

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 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 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안에서 제24조(선거 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해 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 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 는 7명으로 한다.
- ③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정 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 수는 1로 본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내에서'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말이므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정하다는 타동사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의 미하므로 '규칙에서'로 바꾼다.
- * '정한다'는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주어를 '총정수'로 하여 '정해진 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인'은 사람을 나타내므로 '명'으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 [순화안]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 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 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 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 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 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 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 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 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 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 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 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 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③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 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u>자</u>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 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없다.
-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 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u>사람</u>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한다)의 위원이 될 수없다.
-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바로</u> 이에 따라야 한다.
-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 8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 거구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u>부여하여야</u>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u>마련함</u> <u>에 있어서</u>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 당과 <u>당해</u> 자치구·시·군의 <u>의회</u> <u>및 장에</u>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u>존중</u>하여야 한다.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u>부여해야</u>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u>마련할</u>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u>해</u> 당 자치구·시·군의 <u>의회와 장에</u>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u>부여해</u> 야 한다.

①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획정(劃定)'은 경계따위를 명확히 구별해 정한다는 뜻으로 단어 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그냥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획정하 다'처럼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결정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인'은 사람을 나타내므로 '명'으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 *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더 부드러 우 표현이 된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마련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명사형의 문장을 만들어 표현하 고 있으므로 '마련할 때'로 바꾼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 [순화안]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 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

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 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 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이를 <u>획정하되</u>,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u>부득이한</u>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의원정수)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할수 없는 경우에는그렇지 않다.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 '획정(劃定)'은 경계따위를 명확히 구별해 정한다는 뜻으로 단어 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그냥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획정하 다'처럼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결정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분할하다'는 나누다는 뜻이므로 '분할하여'는 '나누어'로 바꿀 수 있다.
- * '부득이한'은 '할 수 없는'으로 바꿀 수 있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순화안]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워지역구"라 한다)는 인 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 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 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 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 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 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 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 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 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 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 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 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않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나누어 이를 결정하되, 하나의 시 · 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 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시·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u>획정</u>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u>획</u> 절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u>인</u>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u>분할할</u>수 있다.

역구시·도의원정수는 1<u>명</u>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시·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나 자치구·시· 군의원지역구를 <u>결정</u>하는 경우 하 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u>나누어</u>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 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 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u>결</u> 절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명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u>나눌 수</u>있다.

- * '아니하게'는 줄임말인 '않게'로 바꾼다.
- * '분할하다'는 나누다는 뜻이므로 '분할하여'는 '나누어'로 바꿀 수 있다.

- * '획정(劃定)'은 경계따위를 명확히 구별해 정한다는 뜻으로 단어 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그냥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획정하 다'처럼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결정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인'은 사람을 나타내므로 '명'으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 | [순화안]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 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 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 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 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 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 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 구의 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 * '이를'은 불필요한 단어이므로 생략한다.
- * '실시하지 아니한다'에서 주어를 '선거는'으로 보면 '실시되지 않 는다'로 고쳐야 한다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순화안]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 조정 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 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

의원정수·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 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 <u>하지 아니한다.</u> 다만, 지방자치단 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 · 폐지 · 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 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3호 단서 · 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 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 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 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 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하게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구역이 변경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하며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 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 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 지 · 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 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3 호 단서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경 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 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 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하 게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 의회의원은 그 구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자신이 속 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하 며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 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 을 얻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 의회의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간으로 하며, 그 재임기간에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 의원정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 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방의 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 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 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주 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 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 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 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 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2.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u>분할되</u> 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

- 그 재임기간에는 제22조(시・도 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 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 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안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옮 겨야 하며, 그 구역이 바뀐 날로 부터 14일 안에 자신이 속할 지 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구역이 바뀐 날로부터 14 일이 되는 날 현재 해당 지방의 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2.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남은기간 재임하며, 그 남은 기간에는 제22조나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u>나뉘어</u>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 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 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 <u>기간</u> 재임하며, 그 <u>잔임기간에는</u>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 대표시·도의원은 <u>당해</u> 시·도 가 분할·설치된 <u>날부터</u>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 · 도의회 를 선택하여 당해 시 · 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 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 할 자치구ㆍ시ㆍ군의회를 선택 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수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 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 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 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u>잔임기간이로</u>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 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의회의원으로 되어 남은기간 재임하며, 그 남은기간에는 제22 조나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 정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u>해당</u> 시·도가 분 할·설치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자신이 속할 시 · 도의회를 선택 하여 당해 시·도의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 시 · 군의원은 해당 자치구 · 시 · 군이 분할·설치된 날로부터 14 일 안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ㆍ 시 · 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 치구・시・군의회에 문서로 신 고해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수 가 제22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 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잃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얻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그 남은기간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 <u>에 불구하고</u>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ㆍ도의 완성거구 확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규정에 따른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 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한다.

- <u>고</u>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 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한다.
- * '이를'은 불필요한 단어이므로 생략한다.
- * '실시하지 아니한다'에서 주어를 '선거는'으로 보면 '실시되지 않 는다'로 고쳐야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 이내에'는 '~ 안에'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를 말하므로 '문서'가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문서'로 바꾼다.
- * '하여야 하며'는 줄임말인 '해야 하며'로 바꾼다.
- * '취득하다'는 '얻다'라는 뜻이므로 '취득하되'는 '얻되'로 바꾼다.
- * '잔임기간'은 '남은기간'을 의미하므로 '남은기간'이 더 쉽게 이해 되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이전하다'는 '옮기다'라는 의미이므로 '이전하여야 하며'는 '옮겨 야 하며'로 바꾼다.
- * '변경되다'는 '바뀌다'는 의미이므로 '변경된'은 '바뀐'으로 바꾼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분할하다'는 나누다는 뜻이므로 '분할되어'는 '나뉘어'로 바꿀 수 있다.
- * '상실하다'는 '잃다'라는 의미이므로 '상실하고'는 '잃고'로 바꿀 수 있다.
- * '취득하다'는 얻는다는 의미이므로 '취득하되'는 '얻되'로 고친다.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 [순화안]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 수의 조정 등)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 거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 수)·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 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 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 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 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 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 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 원정수로 한다.

원선거) ①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 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제3호 단 서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 른 증원선거는 제22조(시・도의회 의 의원정수) · 제23조(자치구 · 시 · 군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 정에 의하여 새로 결정된 선거구 에 따르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못미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그 때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 로 결정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 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 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나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 수를 합한 수를 해당 선거구의 의 원정수로 한다.

③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u>행하게</u>할수있다.

③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 '~ 의한'은 '~ 따른'으로 바꾼다.
- * '획정(劃定)'은 경계따위를 명확히 구별해 정한다는 뜻으로 단어 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그냥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획정하 다'처럼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결정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따라서 '획정한'은 결정된'으로 바꾼다.
- * '의하되'는 '따르되'로 바꾼다.
- * '미달되다'는 '못미치다'라는 의미이므로 '미달되는'은 '못미치는' 으로 바꾼다.
- * '당시의'는 '그 때의'로 바꿀 수 있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아니한'은 줄임말인 '않은'으로 바꾼다.
- * '행하게 할 수 있다'에서 '행'이란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꾼다.
- 의 선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설 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 1.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 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 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 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
-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 [순화안]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시의 선거 등) ①지방자 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 1.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 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 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

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 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u>잔임기간</u> 재임한다.
-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u>라 함은</u> 『지방자치법』 제2 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 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 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 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직을 <u>잃는다.</u> ②지방자치단체의 이름만 바뀐 경
- ②지방자지단체의 <u>이름만</u> <u>바뀐</u>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바뀐</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u>남은기간</u> 재임한다.
-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 치단체"란『지방자치법』제2조(지방 자치단체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 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분할하다'는 나누다는 뜻이므로 '분할되어'는 '나뉘어'로 바꿀 수 있다.
- * '상실하다'는 '잃다'라는 의미이므로 '상실한다'는 '잃는다'로 바꿀 수 있다.
- * '명칭'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 * '변경되다'는 '바뀌다'라는 우리 말로 바꿀 수 있으므로 '변경된' 은 '바뀐'으로 바꿀 수 있다.
- * '잔임기간'은 '남은기간'으로 바꾼다.
- * '~라 함은'은 명사형으로 끝나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라'으로 바 꾼다.

표구를 둔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 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 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 • 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 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 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구) ①읍·면·동에 투 [[순화안] 제31조(투표구) ①읍·면· 동에 투표구를 둔다.

>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 나의 읍 • 면 • 동에 2 이상의 투표 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 • 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 체의 <u>이름</u>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에 따라 투표구의 이름 과 그 구역을 공고해야 한다.

- * '명칭'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 * '분할하다'는 나누다는 뜻이므로 '분할하여'는 '나누어'로 바꿀 수 있다.
-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불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단순하게 '규정에 따라'로 고쳐도 이해가 가능하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고칠 수 있다.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①제37조(명 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 준일<u>부터</u>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 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 구의 구역이 <u>변경된</u> 경우에도 <u>당해</u>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u>변경되</u> <u>지</u> <u>아니한 것으로 본다</u>.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u>명칭만</u>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 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 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 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 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 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순화안]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①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 부작성기준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u>바뀐</u> 경우에도 <u>해당</u>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u>바뀌지 않은 것으로 본다</u>.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u>이름만 바뀐</u>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 명은 <u>바뀐</u>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

정구역명으로 <u>바뀐</u> 것으로 본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변경되다'는 '바뀌다'라는우리 말로 바꿀 수 있으므로 '변경된'은 '바뀐'으로, '변경되지'는 '바뀌지'로 바꿀 수 있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줄임말인 '않은 것으로 본다'로 고친다.
- * '명칭'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 [순화안]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통령선거는 23일
-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3. 삭제
- ②삭제
-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 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 지를 말한다.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통령선거는 23일
-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3. 삭제
- ②삭제
- ③"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 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 * '~이라 함은'이란 표현은 서술어가 중복되므로 '~이란'으로 바꾼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 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순화안]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일이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 '~의한'은 '~ 따른'으로 바꿀 수 있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 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 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 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때부터 60일 <u>이내에</u>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순화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안에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 장 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 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 거일을 정하여 <u>공고하여야 한다.</u>
-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u>이라 함</u> 은 <u>제1항 내지 제3항</u> 및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

- 장 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 거는 전년도 10월 1일로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해서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안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③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u>따른</u>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u>날로부터</u> 30일 <u>안에</u>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 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u>이란 제</u>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6조(연 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 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u>라 함은</u>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날을 말한다.
-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 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

- 따른 선거를 말한다.
-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u>란</u>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날을 말한다.
-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 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

<u>하여</u>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u>하여</u>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로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관하여는'은 '관해서는'으로 바꿀 수 있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이라 함은'이란 표현은 서술어가 중복되므로 '~이란'으로 바꾼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의한'은 '~ 따른'으로 바꿀 수 있다.
- * '~의하여'는 '~ 따라'로 바꿀 수 있다.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순화안]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 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 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 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 정에 따른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 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 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 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 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 투표)의 규정에 따른 재투표를 실 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 하여 공고해야 한다.

- * '~의한'은 '~ 따른'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로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제37조(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 [순화안] 제37조(명부작성) ①선거를 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 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 한다) · 읍장 · 면장(이하 "구 · 시 · 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 역에 한한다) ·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 에 한한다) · 읍장 · 면장(이하 "구 · 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 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 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 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 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 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u>송부하여</u> 야 한다.
- ⑤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 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 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 하게 분철할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 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안(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필요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 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 ④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 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 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⑤<u>투표구 하나의 선거권자 수가 1</u> 천명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 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나누어 철할 수 있다.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 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 ⑦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로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기재하다'는 '써넣다' '적어넣다'로 바꿀 수 있다.
- * '송부하다'는 '보내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는 '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 어 어색하다 따라서 '투표구 하나의 선거권자 수가'로 바꾸는 것 이 부드러운 표현이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분철하다'는 '나누어 철하다'로 바꾼다.

제38조(부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순화안] 제38조(부재자신고) ①선거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 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선 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 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 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u>자</u>는 소속기관 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 당하는 자는 통ㆍ리 또는 반의 장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 다]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 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시· 읍·면의 장에게 문서로 부재자신 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재 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3항제1호나 제2 호에 해당하는 <u>사람은</u> 소속기관이 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 당하는 <u>자</u>는 통·리 또는 반의 장

- 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u>자</u>는 거소투표사유 를 말한다)
-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 3. 주소, 거소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영내 <u>또는</u>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 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 진 영내(營內) <u>또는</u> 함정에 근무 하는 자
- 병원 <u>또는</u> 요양소에 장기기거 하는 <u>자</u>로서 거동할 수 없는 <u>자</u>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u>거</u>
 동할 수 없는 자
-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 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u>자</u>
-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 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u>자로서</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u>자</u>
- ④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 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 를 하고자 하는 <u>사람은</u> 거소투 표사유를 말한다)
- 2. 이름, 성별, 생년월일
- 3. 주소, 거소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영내<u>나</u>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u>나</u>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2. 병원<u>이나</u> 요양소에 장기기거하 는 <u>사람으</u>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u>움</u> 직일 수 없는 사람
-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u>사람으로서</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u>사람</u>
- ④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 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 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u>이를</u> 준용한다.

⑦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 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 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⑥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_ 준 용된다.

⑦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 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거동하다'는 '움직이다'이므로 '거동할'은 '움직일'로 바꾼다.
- * '~의한'은 '~따라'로 바꾼다.
- * '~의하여'는 '~ 따라서'로 바꾼다.
- * '송부하다'는 '보내다'로 바꾼다.
- * '이를 준용한다'에서 '이를'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생략하고. '준 용한당'의 주어는 '규정은'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준용된다'로 바꾸는 것이 옳다.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①선거 | [순화안]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 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 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 · 시 · 읍 · 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

①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 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

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

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u>해</u> 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 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와 협의<u>하여야 한다.</u>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삭제
- (7)삭제
-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u>해</u> 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 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산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삭제
- (7)삭제
-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관하여는'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관해서는'이라는 표

현이 더 자주 사용되므로 바꾼다.

- * '이를'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생략한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통보하다'는 '알리다'란 의미이므로 '알리다'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은 '해임할 때에는'으로 바꾼다.
- * '불응하다'는 '따르지 않는다'란 의미이므로 '불응하거나'는 '따르 지 않거나'로 바꾼다.
- * '~는 ~는'은 '는'이 반복되어 어색하므로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로 바꾼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해서는 안 된다'로 고치는 것이 우리 일 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제40조(명부열람) ①구·시·읍·면 [순화안] 제40조(명부열람) ①구· 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 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 설 ·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 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

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 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로터 3일 간 장소를 정해서 선거인명부를 훓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해 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훓어볼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

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 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 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열람개 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 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를 자유로이 훓어볼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 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 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구·시·읍·면의 장은 열람개 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 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 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정하여'는 '정해서'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열람하다'는 훓어보다'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 | [순화안]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에 빠뜨림 또는 잘못 적음이 있거 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 <u>서면으로</u> <u>당해</u> 구·시·읍·면의 장에게 <u>이의</u>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 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에 구술<u>이나</u> <u>문서로</u> <u>해당</u> 구· 시·읍·면의 장에게 <u>다른 의견을</u>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u>바로</u> 선거인명부를 <u>바로잡고</u>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u>알려</u> 약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u>알려야 한다.</u>

- * '누락'은 '빠뜨림'으로 바꿀 수 있다.
- * '오기'는 잘못적는 것을 의미하므로 '잘못 적음'으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이의'는 다른 의견을 의미하므로 '다른 의견'으로 바꿀 수 있다.
- * '즉시'는 '바로'로 바꿀 수 있다.
- * '정정(訂正)하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란 의미이므로 '바로잡 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통지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①제41조 [순화안]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 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 · 시 · 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 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 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 사 ·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 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u>통지하</u> 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 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불 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 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 사 ·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 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알려 선 거인명부를 바로잡게 하고 신청인 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 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통지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정정(訂正)하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란 의미이므로 '바로잡

다'로 바꿀 수 있다.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제41 [순화안]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이의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 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선거 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 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 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 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 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 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 사 ·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 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 <u>여</u> 선거인명부를 <u>정정하게</u>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로 부터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의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구ㆍ 시ㆍ읍ㆍ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 거인명부에 빠뜨린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 시ㆍ읍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덧붙여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선거 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 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 사 ·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 고 결정한 때에는 바로 관계구ㆍ 시·읍·면의 장에게 알려 선거인 명부를 <u>바로잡게</u>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ㆍ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누락'은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락된'은 '빠뜨린'으로 바꿀 수 있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첨부하여'는 '덧붙여'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즉시'는 '바로'로 바꿀 수 있다.
- * '통지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정정(訂正)하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란 의미이므로 '바로잡 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 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순화안]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 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 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 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 [순화안]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 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 실 · 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 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명 부작성)제4항 및 제38조(부재자신 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 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 인명부의 재작성·열람·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없어지거나 못쓰게 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 만, 제37조(명부작성)제4항과 제38 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 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 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 인명부의 재작성·열람·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멸실'은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 며, 그것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 다. 따라서 '멸실'은 '없어짐'으로 바구는 것이 이해가 쉽다.
- * '훼손'이란 권리나 명예·신용 등 무형물에 대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물 건 등 유형물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 는 개념이다. 따라서 '훼손'은 '닳아 없어짐, '손상시킴, '못쓰게 함'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아니할 수 있다'는 줄임말인 '않을 수 있다'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읍·면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 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비례대표시 · 도의원 및 비 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 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 다] · 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 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 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 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 [순화안]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 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 를 제외한다] · 선거사무장(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 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 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 명부나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 로 1통씩 24시간 안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인명 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

- 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u>당해</u>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u>자는</u>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u>납부하여야 한다.</u>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u>양도</u>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 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u>해당</u> 구·시·읍·면의 장에게 문서로 해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 청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 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u>넘겨주거나</u> <u>빌려줄 수 없으며</u> 재산상의 이익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 * '교부하다'는 '내주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과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른'과 '규정에 따라 서'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양도'는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넘겨줌'이나 '줌으로 바꿀 수 있다.
- *'대여'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물건이 나 그전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 익·소비하게 하고 일정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대여'는 '빌려줌'으로 바꿀 수 있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 | [순화안]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 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 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 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 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 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 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 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 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할 수 있다.

-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 야 한다.
-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넘어서 추천할 수 있다.

-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u>해야</u> 한다.
-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선거에 있어'는 조사 '서'가 생략된 것으로 '선거에 있어서'가 옳다.
- * '초과하다'는 '넘다'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순화안]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u>자를 당해</u>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u>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u>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후 3일)부터 검인하여 <u>교부하는</u>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한다.</u>

- 1. 대통령선거
 -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천500인 이상 5천인이하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300인 이상 500인 이하
-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100인 이상 200인 이하
-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 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

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 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u>사람을</u>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 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 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 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 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 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 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로부터 검인하여 내주는 추천 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1. 대통령선거
 -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명이 상으로 한 2천500명이상 5천명이하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300명 이상 500명 이하
-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100명 이상 200명 이하
- 4. 시·도지사선거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

- 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 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 상 2천인 이하
-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 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 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u>아니한</u>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u>아니된다</u>.
- ④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 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 를 50명 이상으로 한 1천명 이 상 2천명 이하
-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 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 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u>않은</u>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u>안된다.</u>
- ④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 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를 제외한다'에서는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는 제외된다'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교부하다'는 '내주다'로 바꿀 수 있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아니한'은 줄임말인 '않은'으로 바꾼다.
- * '아니된다'는 줄임말인 '안된다'로 바꾼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의 [순화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 거일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 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 (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 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 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 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 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 시일"이라 한다)로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신 청해야 한다.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 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사람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 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u>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u>기</u>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면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u>첨부하여야 한다.</u>

④<u>제1항 내지 제3항의</u> 규정에 <u>의</u> <u>하여</u>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u>자는</u>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u>하여야 하</u> <u>며</u>,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u>납부하여야 한다.</u>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 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 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대표자가 이름쓰고 도장찍은 추천 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 록신청서에 <u>덧붙여야 한다.</u> 이 경 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 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 보자명부를 함께 <u>덧붙여야 한다.</u>

③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이름새기고 도장찍은(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사잇도장이 필요하지 않다)을 등록신청서에 덧붙여야 한다.

- ④<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u>사람</u> 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u>내야 하</u> 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u>내야 한다.</u>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 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공직선 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다.
-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 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 한 증명서류
- 6.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 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 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 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 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예비후보 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 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 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 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증명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다.
-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 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 한 증명서류
- 6.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인쇄물,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4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 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 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 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정당의 당원인 <u>자는</u> 무소속후보 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 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 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에는 <u>당해</u>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 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u>공</u> <u>휴일에 불구하고</u> 매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 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 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 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u>제</u> 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서류를 갖추지 <u>아니하거나</u> 제 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 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4항의 <u>규정에도 불구하고</u>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0조의2(예비후 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 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 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 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 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 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 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u>공</u> <u>휴일에도</u>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 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u>바로</u> <u>받아야 하되</u>,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u>제4항제2호부</u> <u>터 제5호까지의</u> 규정에 의한 서류 를 갖추지 <u>않거나</u>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 위반한 등록신청은 <u>이를 수리할</u>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 나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 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u>지체</u>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u>당해</u>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u>회보하여야</u>한다.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 또는</u>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 <u>터</u>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의</u>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u>조회할 수</u> 있으며, <u>당해</u>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u>지체없이</u> 그 전과기록을 <u>회보하여야 한다</u>. 이 경우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u>제출하여야 하며</u>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u>대</u>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u>지체없</u>

신청은 <u>받을 수 없다</u>.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u>덧붙여지지 않은</u> 경우에는 이를 <u>받되, 해당</u>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u>바로</u> 그 사실을 확인하여 <u>해</u>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u>답해야 한다</u>.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 <u>안에</u> 해당 당선인의 제4항제2호의 규정에 <u>따라</u>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u>따</u>른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u>보내</u>야한다.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로 부터 본인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알아볼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그 전과기록을 답해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함께 내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등록마감후 바로 해당 선거구를

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 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 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 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 | 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 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 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 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3)삭제

(4)삭제

[5]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 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 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보자의 전과기록을 알아볼 수 있 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 기록의 진위여부를 <u>바로 답해야</u>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 정에 따라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 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 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①3삭제

(14)삭제

⑤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서명 날인하다'는 '이름쓰고 도장찍는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덧붙이다'로 바꾼다.
- * '기명'은 행위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로 자필을 제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서명, 프린터, 타이프 등) 자기의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한다. 굳이 우리 말로 바꾸자면 '이름새기기'정도로 바꿀 수 있다.
- * '날인'은 '도장찍기'로 바꿀 수 있다.
- * '무인'은 '손도장'을 말한다.
- * '아니한다'는 '않는다'로 줄인다.
- * '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로 하는 것이 좋다.
- * '간인(間印)'은 '사잇도장', '이음도장'을 말한다.
- * '〜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나 '〜을 요하는'은 일본어 '〜を 必要に する 場合'를 직역(直譯)한 표현이므로 '〜이(가) 필요한 (경우)'으로 고쳐 쓴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의한'은 '~ 따른'으로 바꿀 수 있다.
- * '~의하여'는 '~ 따라'로 바꿀 수 있다.
- * '제출하다'는 '내다'를 의미하므로 바꾼다.
- * '납부하다'는 '내다'를 의미하므로 바꾼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공휴일에 불구하고'는 '공휴일에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 * '즉시'는 '바로'로 고친다.
- * '수리'는 신청, 청원, 소송, 제출이 등에 있어서 공적 기관이 그 내용의 심리 또는 심사를 한 후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들 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에서 '이를'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생략한다.
- * '이를 수리할 수 없다'에서 '이를'은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생략하고, 주어는 등록신청으로 이해하여 '수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회보'는 어떤 물음이나 요구에 대답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보하다'는 '답하다'로 바꿀 수 있다.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 * '송부하다'는 '보내다'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조회하다'는 '알아보다'로 바꿀 수 있다.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 [순화안]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 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 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 • 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 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 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 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u>자의</u> 다음으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 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 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 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 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 록된 사람의 다음으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 [순화안]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 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 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정 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조(후보 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 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 등록기간중이나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정 당의 후보자추천)와 제49조(후보자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 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선거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선거에서'로 간단하게 줄인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의하여'는 '따라'로 바꿀 수 있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순화안]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 이 발견된 때
-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 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 이 발견된 때
-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구 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u>의한</u>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 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 의 규정에 <u>의한</u> 추천인수에 <u>미</u> 달한 것이 발견된 때

- 3.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u>제2</u>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u>의한</u> 서류를 제출하지 <u>아니한</u> 것이 발 견된 때
- 4. 제49조제6항의 <u>규정에 위반하여</u>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u>규정에 위반하여</u>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 · 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8.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제2항<u>및</u> 제57조 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u>규</u> 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 견된 때
- ②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

-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 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에 미 달된 것이 발견된 때
- 3.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u>제2</u> <u>호부터 제5호까지</u>의 규정에 <u>따</u> <u>른</u> 서류를 제출하지 <u>않은</u> 것이 발견된 때
- 4. 제49조제6항의 <u>규정을 위반하</u>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 항<u>과</u> 제3항의 <u>규정을 위반하여</u>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8.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제2항<u>과</u> 제57조 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u>규</u> 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 견된 때
- ②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 로 하다.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 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 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 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 록된 때에는 그 등록을 모두 무효 로 하다.

> ③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 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드러내어 알려야 한다.

- * '무효로 한다'에서 주어를 등록으로 보면 '무효로 된다'로 바꾸어 야 하다.
- * '규정에 위반하여'는 조사를 잘못사용한 경우로 '규정을 위반하 여'로 바꾸어야 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바꾼다.
- * '미달한 것이'는 어법상 '미달된 것이'가 맞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 * '아니한'은 줄임말인 '않은'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등록은'은 무효로 한다의 목적어이므로 '등록을'로 고친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명시하다'는 '분명히 드러내 보이다'는 의미이므로 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 * '통지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 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 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 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순화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 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 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 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 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u>또는</u> 교 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 근 임원
-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 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 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 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의 상근 임원
- 7.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
 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

-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 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은 그렇지 않다.
-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u>이나</u> 교 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 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 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 근 임원
-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 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 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 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6.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의 상근 임원
- 7.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
 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

만 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 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 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 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 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 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 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 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 이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가서 문서로 신고하되, 정당 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덧 붙여야 한다.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순화안]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 후보자가 등록 · 사퇴 · 사망하거나 |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u>바로</u> __ 공고하고, 상급선거관 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통지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로 '해야 한다'로 바꾼다.

제56조(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 [순화안] 제56조(기탁금) ①후보자등

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 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시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 천만원
-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 만원
-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제271 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 대집행)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 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 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 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 1. 대통령선거는 5억원
-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 천만원
-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 만원
-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 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 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 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 * '자'는 '사람'으로 고친다.
- * '인'은 '명'으로 고친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납부하다'는 '내다'로 고칠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로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아니한다'는 '않는다로 고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고친다.

-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 (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기 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 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u>이내</u> <u>에</u> 기탁자에게 <u>반환한다</u>.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 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 전액
 -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 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 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 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u>이내에</u> 국가 <u>또는</u>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u>귀속한다.</u> 이 경우 제 56조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기탁 금에서 <u>부담하여야</u> 할 비용이 해 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 [순화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안에 기탁자에게 돌려준다.
 -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 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 전액
 -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 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 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u>돌려주지</u> 않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안 에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u>돌아간다.</u>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기탁금에서 <u>부담해야</u>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u>돌려</u>주지 않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u>당해</u>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의 <u>고지에</u> 따라 그 넘는 금액을 <u>당해</u>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u>날부터</u>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u>납부하여</u> 야 하며, 그 기간내에 <u>납부하지</u>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 할세무서장에게 <u>위탁하여</u> 관할세 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u>또는</u>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u>납입하여야</u> 한다.

- ③삭제
- ④삭제
-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u>기타</u>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알 림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해당 기탁자가 그 알림을 받은 날로부 턴 10일 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내 지 않은 때에는 우선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 무서장에게 맡기어 관할세무서장 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하여 국가나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내야 한다.

- ③삭제
- ④삭제
-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u>기타</u>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고친다.
- * '~ 이내에'는 '~ 안에'로 고칠 수 있다.
- * '반환하다'는 '돌려주다'로 바꿀 수 있다.
- * '아니하는'은 줄임말로 '않는'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귀속하다'는 '돌아간다'로 고칠 수 있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고지'는 '알림'이라는 순 우리말이 있으므로 바꿀 수도 있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납부하다'는 '내다'로 바꿀 수 있다.
- * '아니한 때에는'은 '않은 때에는'으로 바꿀 수 있다.
- * '위탁하다'는 '맡기다'는 의미이므로 바꿀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고칠 수 있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 [순화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 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 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 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 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 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 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 보자로 등재된 사람을(이하 "경선 후보자"라 한다)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문서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 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 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 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 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 인이 될 수 없다.

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 변경 등으로 그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 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u>사람은</u> 당내경선의 선 거인이 될 수 없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아니한'은 '않은'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 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 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 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 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u>자에게</u> 투표 권을 <u>부여하여</u>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거운동)제1항<u>제1호 내지 제3호의</u> 규정에 따른 방법
-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 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 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

[순화안]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u>사람</u> <u>에게</u> 투표권을 <u>주어</u> 실시하는 당 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 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거운동)제1항<u>제1호부터 제3호까지</u> 의 규정에 따른 방법
-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 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 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

하여 발송하는 방법

-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u>규정에 위반되는</u> 경선 운동에 <u>소요</u>되는 비용은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 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발송하는 방법

- 3. 정당이 합동연설회<u>나</u> 합동토론 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u>나</u>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 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u>해</u> 단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③제1항의 <u>규정을 위반하여</u> 경선 운동에 <u>드는</u> 비용은 제119조(선거 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 거비용으로 본다.
-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부여하다'는 '주다'이므로 '부여하여'는 '주어'로 바꿀 수 있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고친다.
- * '소요되다'는 비용이나 시간이 들다라는 의미이므로 '소요되는'은 '드는'이나 '걸리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는 ~는'은 '는'이 반복되어 어색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은 그 의미를 살려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 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 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u>수 있다.</u>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 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 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순화안]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 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에 맡길 수 있다.

>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제57조의3(당 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 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 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당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 내경선사무를 맡기는 경우 그 구 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위탁하다'는 맡기다는 의미이므로 '위탁할 수 있다'는 '맡길 수 있다'로 고칠 수 있다.
- * '수탁'은 맡는다는 의미이므로 '수탁관리하는'은 '맡아관리하는'으 로 바꿀 수 있다.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 | [순화안]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 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 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 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 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 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 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 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의 배 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 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u>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u>그러</u>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 자가 되지 <u>아니하게</u> 하거나 후보 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 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u>하여서는 아니</u> <u>되며</u>,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u>하여서는 아니된다.</u>

③누구든지 제1항 <u>및 제2항에</u>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u>규칙으로</u>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렇지 않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u>않게</u> 하거나 후보자가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사람을</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u>해서는 않되며</u>,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중낙해서는 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u>및</u> <u>제2항에서</u>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해서는 않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아니히게'는 '않게'로 고친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해서는 안된다'로 바꾼다.
- * '제2항에 규정된'은 정확하게 '에서'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 [순화안] 제57조의6(위탁하는 당내 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 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 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 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 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 이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 탁)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 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 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 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 * '위탁하다'는 '맡기다'는 단어로 바꿀 수 있으므로 '위탁하여'는 '맡겨'로 바꾼다.
- * '~는 ~는'은 '는'이 반복되어 사용되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 서 '경우에는'은 '경우에'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 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 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 [순화안]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 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 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
-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u>그렇지</u>
 않다.
- * '~이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이므로 간단하게 '~란'으로 바꾼다.
- * '각호의 1'에서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호의 1'과 같은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 '아니한다'는 줄여서 '않는다'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 [[순화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 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 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u>하다.</u>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을 하는 경우
-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 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 거운동)제1항<u>과</u>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을 하는 경우
-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 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

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순화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 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 는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 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 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없는 사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 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사람)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 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 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 외한다)은 그렇지 않다.
-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 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 는 사람(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 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 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 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위원
-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 표자

9. 삭제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

-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 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 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위원
-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 표자

9. 삭제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하며, 선거일후 6월 안(주민자치위

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 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 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 하여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 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이내에는'은 '~안에는'으로 바꾼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u>(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u>및</u>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u>날</u>(그 날후에 실 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 류를 <u>첨부하여</u> 예비후보자등록을 선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 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 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

[순화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
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
가 확정된 때)로부터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 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 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

록은 무효로 한다.

-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그 직
 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u>자</u>
 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 관리위원회는 <u>지체없이 이를</u> 수리 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 에 <u>대하여는</u>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u>조회할</u>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u>준용한다</u>.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 ⑥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u>자는</u> 후보 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 는 것으로 본다.
- ⑦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록은 무효로 된다.

-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u>사람에</u>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 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 관리위원회는 바로 수리하되, 피 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 항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조회 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바로 해 당 사항을 조사하여 답해야 한다.
-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 ⑥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u>사람은</u> 후 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 하는 것으로 본다.
- ⑦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무효로 한다'의 주어를 '등록'으로 이해하면 '무효로 된다'가 정 확한 표현이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고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대하여는'은 '대해서는'으로 바꾼다.
- * '조회하다'는 '알아보다'로 바꿀 수 있다.
- * '회보하다'는 쉬운 말인 '답하다'로 바꿀 수 있다.
- * '준용한다'의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 혀이 된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꿀 수 있다.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 [순화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 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 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 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u>기타</u> 홍보에 필요 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

- 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 1항과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 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2. 자신의 이름·사진·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 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

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u>기</u> <u>타</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u>그러하</u>지 아니하다.

-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 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 성・화상 또는 동영상 <u>기타의</u>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장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 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 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 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 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 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 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 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 성·화상 또는 동영상 <u>그</u> 밖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넘을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과 예비후 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 서 신고한 1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 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u>서면으로</u> 신청 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본다.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 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 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 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이 를·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 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 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 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 은 다른 법률의 <u>규정에도 불구하</u> 고 <u>바로</u>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 나눠 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 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u>문서로</u> 신청하 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 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u>관해서는</u> 제46조(명부사본 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초과하다'는 '넘다'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고친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교부하다'는 '나눠주다'로 ㅂ마꿀 수 있다.
- * '납부하다'는 '내다'로 바꿀 수 있다.
- * '관하여는'은 '관해서는'으로 바꾼다.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정 | [순화안]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당 <u>또는</u> 후보자는 선거운동 <u>기타</u>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 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 다 선거연락소 1개소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u>당해</u> 국회 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 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 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u>아니하는</u> 구·시·군마다 선거 연락소 1개소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 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 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 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①정당<u>이나</u> 후보자는 선거운동 <u>그</u>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 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정당<u>이나</u>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 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u>해당</u> 국회 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 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 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u>않는</u> 구·시·군마다 선거연락 소 1개소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u>와</u>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 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 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 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u>당해</u> 선거 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 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 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 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 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 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 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u>해당</u> 선거 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 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 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 ②선거사무소난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있다.
 -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 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 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u>의하여</u> 후보자등록 을 마친 때에는 <u>당해</u> 예비후보자 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 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 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 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⑥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u>첩부할</u>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u>상실한</u>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u>의하여 설</u> <u>치한</u> 선거사무소를 <u>폐쇄하여야 하면</u>, 이를 <u>폐쇄하지 아니한 경우</u>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u>당해</u>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 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u>따라</u>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u>해당</u>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 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 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 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⑥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붙일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수있다.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u>잃은</u>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라 설치</u> 된 선거사무소를 <u>닫아야 하며</u>, 이를 <u>닫지 않는 경우</u>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는 <u>해당</u> 예비후보자에게 바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해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

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아니하는'은 줄임말인 '않는'으로 바꾼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고친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첩부하다'는 사진 따위를 붙이다는 뜻이므로 '첩부할 수'는 '붙일수'로 바꾼다.
- * '상실하다'는 '잃다'라는 의미이므로 바꾼다.
- * '설치한'은 선거사무소를 꾸며주므로 '설치된'으로 바꾼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 * '폐쇄하다'는 '닫아 없애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하며'는 '해야 하며'로 바꾼다.
- * '즉시'는 '바로'로 고친다.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순화안]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 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 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 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 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 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서면으</u>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_해 <u>당</u>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 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 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 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 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다.

-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ㆍ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명을 두어야 하며, 2명 이 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 에는 바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신고

로 신고<u>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신 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u>지</u> 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설치연월일
-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3. 소장의 <u>성명</u>·주소·주민등록 번호
- 4. 사무소인(印)
-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 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u>당해</u> 정당을 대표한다.
-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 거사무소를 즉시 <u>폐쇄하여야 한다.</u>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
- 무소에 <u>이를 준용한다.</u>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 당선거사무소"로 본다.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1. 설치연월일
- 2. 사무소의 있는 곳와 명칭
- 3. 소장의 <u>이름</u>·주소·주민등록 번호
- 4. 사무소도장
-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 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 는 모두 합하여 4개 이내로 한다.
-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 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해당 정당을 대표한다.
-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선거사무소를 <u>바로</u> <u>닫아야 한다.</u>
-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 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 무소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선거사 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 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 사무소"로 본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고친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소재지'는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인(印)'은 '도장'으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즉시'는 '바로'로 바꾼다.
- * '폐쵀하다'는 '닫다'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하다'의 주어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준용되다'로 바꿔

야 한다.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순화안]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 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 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 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 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 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 해 시 · 도안의 구 · 시 · 군(하나 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 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에 당 해 구·시·군안의 읍·면·동 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임) ①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 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 거사무장 1명을, 선거연락소에 선 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 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

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

1. 대통령선거

하 같다]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시 · 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 해 시 · 도안의 구 · 시 · 군(하나 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시·군수 가 10 미만인 때에는 10명)이내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에 당 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 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군의 장 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 는 구·시·군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 이내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 이내
-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 6.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그 구·시·군
 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
 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 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u>자중에서</u> 선거사무장을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 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 2. 시 · 도지사선거

- 시·군의 장 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 는 구·시·군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 이내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 이내
-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 6.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그 구·시·군 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 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명 이내
-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 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u>사람중에서</u> 선거사무장을 포 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대통령선거
 10명 이내
- 2. 시 · 도지사선거

5인 이내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 ④제135조제1항 단서의 <u>규정에 의하여</u>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선거사무장을 두지 <u>아니한</u>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 ⑥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 임할 수 없다.
- ⑦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 는 <u>자를</u>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 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선거 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 원을 이 법의 <u>규정에 의한</u> 방법으 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

5명 이내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3명 이내
-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명 이내
- ④제135조제1항 단서의 <u>규정에 따</u>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u>센해 넣지 않는다.</u>
- ⑤선거사무장을 두지 <u>않는</u>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 ⑤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 임할 수 없다.
- ⑦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따른</u>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u>규정에 따른</u>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산입하다'는 '셈해 넣다'로 바꿀 수 있다.
- * '아니한'은 '않는'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 | [순화안]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 계자의 신고) ①정당・후보자 또 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 거연락소를 설치 · 변경한 때와 정 당 · 후보자 · 예비후보자 · 선거사 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 무장 · 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 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 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 을 수 없다.

②선거사무장 등은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 을 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정당ㆍ후 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 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 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 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 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 장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바로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 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 여 제62조(선거사무 관계자의 선 임)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선거사무장 등은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달고 선거운동을 해 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바로 반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 반환하지 <u>아니한</u> 때에는 선거사무장등의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u>정</u> 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u>즉시</u> 이를 <u>교부하여</u> 야 한다.

④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 치신고서·선거사무장 등의 선임 신고서와 신분증명서의 서식 및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환<u>해야 하되</u>, 반환하지 <u>않는</u> 때에는 선거사무장 등의 교체신고를할 수 없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u>정</u> <u>에 따른</u>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u>바로</u> 이를 <u>교부해야</u> 한다.

④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선거사무장 등의 선임신고서와 신분증명서의 서식 및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한다'로 고친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는 '규정에 따른'으로 바꾼다.
- * '패용하다'는 '달다'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즉시'는 '바로'로 바꾼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아니한'은 '않은'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고친다.

제64조(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 [순화안] 제64조(선전벽보) ①선거운 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 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ㆍ성 명ㆍ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정 당 ·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 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 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정당추천후보자 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 소속"이라 표시한다) ·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 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

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 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 한다)ㆍ이름ㆍ기호[제150조(투표용 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 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 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 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정당추 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 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경 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 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

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 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 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 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 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 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 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 시 ·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 대표시 · 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 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 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 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 성 · 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 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 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 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 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 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 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 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정견 및 소속정 당의 정강·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 보자명단을,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 · 도의원 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 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 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 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붙인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 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 인구 <u>1천인</u>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 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 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 인하여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 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 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 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 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 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후보자가 작 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전벽 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전벽보 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 감일후 2일이내를 말한다)까지 붙 일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 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붙인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 하지 않을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 부하지 않을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 시에 문서로 신고해야 하되, 선전 벽보를 첩부하지 않을 지역을 신 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구ㆍ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 을 지정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항의 <u>규정에 따라</u> 후보자가 작성 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전벽보 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 일까지 공고<u>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 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학 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 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 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 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 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 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 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까지 공고<u>해야 한다.</u> 이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 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학 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 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 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 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 원회에 문서로 해야 하며, 이의제 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 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 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u>해야 한다</u>.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가 <u>첩부한</u> 선전벽보가 <u>오</u> <u>손되거나</u>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 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u>규정에</u>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u>검인을</u>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 붙여야 한다.

⑨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선전벽 보를 <u>첩부하는</u>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u>기타</u>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10)삭제

①선전벽보의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가 붙인 선전벽보가 오손 되거더럽혀 지거나 훼손되어 보완 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의 <u>도장을 찍어</u>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⑨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선전벽보 를 <u>붙이는</u>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 는 토지·건물 <u>그 밖에</u>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해야 한다.

① 삭제

①선전벽보의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첩부하다'는 사진 따위를 붙이다는 뜻이므로 '첩부한다'는 '붙인 다'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혀이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바꾼다.
- * '당해'라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지 아니할'은 줄임말로 '~하지 않을'로 바꾼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오손되다'는 더럽혀지다는 의미이므로 '오손되거나'는 '더럽혀지 거나'로 바꾼다.
- * '검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이므로 '검인을 받아'는 '도장을 찍 어'로 바꾼다.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 | [순화안]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

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 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 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 거공보의 수량은 <u>당해</u>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u>상당하</u> 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 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 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 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 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 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 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 에 있어서는 전단형선거공보를 포 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 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 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 거공보의 수량은 <u>해당</u>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 <u>해당하</u> 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u>해당하는</u> 수 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 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 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 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 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 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 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 항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 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 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 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 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 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에게는 제154조(부재자신고인 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 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 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 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 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 과 동일하게 작성<u>해야 한다.</u>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 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 항에서 같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추가등록)의 규 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 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 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 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 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 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 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게는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 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 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 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 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 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 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 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u>하지 아니한</u>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 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u>하여야 한다.</u>

-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 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 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 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

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 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 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u>하지 않은</u>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 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u>해야</u> 한다.

-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 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재 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매세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 하여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 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 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 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 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 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해야 한다.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 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 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 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 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 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 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 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 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 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 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 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 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 지 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

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된다]

- 4.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 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 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 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 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 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 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 담해야 한다.
-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제7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__ 준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u>첩부하지 아니할</u> 지역"은 "발송<u>하지 아니할</u>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⑩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 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 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용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 거공보"로, "불이지 않을 지역"은 "발송하지 않을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 는"으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 로 본다.

⑩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 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 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상당하는'은 그에 준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하지 아니한'은 '하지 않은'으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혂이다.

- * '제외한다'에서 주어를 실적으로 보면 '제외된다'로 고쳐야 한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의 주어를 '규정은'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로 해야 옳다.
- * '첩부하다'는 '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제66조(선거공약서) ①지방자치단체 [순화안] 제66조(선거공약서) ①지방 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추 진계획서를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 할 수 있다.

②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기호・경력 등, 정당추천후 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 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수 중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ㆍ 시 ·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게재한 인쇄 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 을 작성할 수 있다.

②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기호・경력 등, 정당추천후 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 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수 중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 구 안의 세대수와 제4조(인구의 기 준)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원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 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 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 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 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 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u>제출하게 하거</u> 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내로 작성한다.

④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 구 안의 세대수와 제4조(인구의 기 준)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u>해야하며</u>,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u>해야 한다.</u>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 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 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u>후보자는</u> 그 전산자 료 복사본을 <u>제출하거나</u>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u>할</u> 수 있다.

⑧제64조(선전벽보)제3항·제7항 ◎제64조(선전벽보)제3항·제7항 및 제65조(선거공보)제4항은 선거 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선전벽보 또는 책자 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 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 은 종류로 본다.

⑨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 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및 제65조(선거공보)제4항은 선거 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준용된다. 이 경우 "선전벽보 또는 책자형 선 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 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 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 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 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 류로 본다.

⑨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 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 * '상당하는'은 '해당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로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 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에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 후보자는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4항'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 | [순화안]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

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u>당해</u> 선거 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②삭제
-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 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 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 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 • 면 •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2)삭제
-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 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

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 [순화안] 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계존 · 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 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 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 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 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 2. 국회의원선거20인 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인 이내
- 4. 시·도의원선거 5인 이내
-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3인 이내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 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의 직계존 · 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 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 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 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 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에 의 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 라도 그 수에 셈해 넣지 않는다.

-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명 이내
- 2. 국회의원선거20명 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명 이내
- 4. 시·도의원선거 5명 이내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명 이내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 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산입하다'는 '셈해 넣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지 아니한다'는 줄임말로 '~하지 않는다'로 바꾼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 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 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 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 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 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 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 3. 시·도지사선거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

[순화안]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 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 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 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 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 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 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 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 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 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 3. 시·도지사선거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

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 회를 더한다.

- ②제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③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 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 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u>하여야</u> 한다.
-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 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 ⑤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 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 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 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전일까

- 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 회를 더한다.
- ②제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③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 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 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 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u>해야 한다.</u>
-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 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 고란에 해야 한다.
- ⑤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해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u>게재해서</u>는 안된다.
- ⑥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 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 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전일까

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삭제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ㆍ관 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 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 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 업 · 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 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⑨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 (7)삭제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 · 관 리하는 사람은 그 광고비용을 산 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 · 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 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 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⑨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꾼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인 '해서는 안된다'로 바꾼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동을 위 [순화안] 제70조(방송광고) ①선거운 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 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 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 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

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 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 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 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 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 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 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 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 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 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u>및</u>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u>및</u>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 ②삭제
- ③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 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 바</u>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제 73조(방송광고 등)제2항 및 제5항 의 규정을 <u>적용하지 아니한다.</u>
- ⑤방송시설을 경영 <u>또는</u> 관리하는 <u>자는</u>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 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대통령선거 텔레비전<u>과</u>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u>과</u>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 ②삭제
- ③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광고를 실 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 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u>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u>알려야 한다.</u>
-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 73조(방송광고 등)제2항 및 제5항 의 규정을 <u>적용하지 않는다.</u>
- ⑤방송시설을 경영<u>나</u> 관리하는 <u>사</u> <u>람은</u>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 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 게 <u>하여야 하며</u>,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 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의한다.

⑥후보자는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 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 할 수 있다.

(7)삭제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u>자는</u>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u>기타</u>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u>해야 하며</u>,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u>는 바에 의한다.

⑥후보자는 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 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 할 수 있다.

(7)삭제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은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그밖에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혀이다.
- * '통보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지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후 [순화안]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 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 은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 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 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 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 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연설)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 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ㆍ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 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 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 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 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u>2인</u>이 각 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 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 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 에서 선임된 대표 <u>1인</u>이 1회 10 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 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 송별 각 1회
-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11회 이내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u>2명</u>이 각 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 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 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 에서 선임된 대표 <u>1명</u>이 1회 10 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 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 송별 각 1회
-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해당 시·도의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하다.

말한다.

- ③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 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u>하여서는 아니되며</u>,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u>하여</u>야 한다.
-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방송시설 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

- ③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 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의 방송연설에 __준용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영되게 해서는 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 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 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 록신청시 후보자에게 <u>알려야 한다.</u>
-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

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 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 시 · 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 · 소요 시간 ·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 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 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 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 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 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 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 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 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 · 이용일시 · 소

연설을 할 사람의 이름 ㆍ 소요시 간 ·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 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 로 제출해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 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 게 공평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 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않 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 영 · 관리하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부 터 제5호가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 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과 체결한 방 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덧붙여 서 이용할 방송시설명 · 이용일시 ·

요시간·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선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한다.

②『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 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 보자에게 공평하게 <u>하여야 한다.</u> ③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 방법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소요시간 ·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 한 연설에 협조해야 하며, 방송시 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 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

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 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 보자에게 공평하게 <u>해야 한다.</u> ③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 방법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이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이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 * '하여서는 아니되며'는 '해서는 안되며'로 줄여서 표현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서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통보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 [순화안]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 방송)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 으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 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 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 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자연설의 방송) ①텔레비전 및 라 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의 부담으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 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 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u>이를</u> 준용한다. 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당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 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③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 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u>준</u> 용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형이다
- * '통보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하지 아니한'은 줄임말인 '하지 않은'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73조(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 [순화안] 제73조(경력방송) ①한국방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 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 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 하는 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 · 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이 름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무소 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그 밖에 주요한 경력을 선거 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해야 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회수는 텔레 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 1.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 선거 각 2회 이상
- 3. 시 · 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
-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회 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 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 담하다.
- ④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 12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 보자연설의 방송)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 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 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회수는 텔레 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 선거 각 2회 이상
- 3. 시 · 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
-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회 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④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 12항과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 자연설의 방송)제2항의 규정은 경 력방송에 준용된다.
-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 송실시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각호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의한다'는 '따른다'로 바꾼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 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 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 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 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 12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 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한 [순화안]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 방송) ①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 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 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 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따르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 ②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 12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

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에 이를 준용한다.

에 준용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의한다'는 '따른다'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순화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 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 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 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 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 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 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 연설 · 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설·대담)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나 연설원[후보자(대통 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 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u>사람</u> 중에서 지명한 <u>2명</u>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 한 2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선거운동 기간중에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 장 ·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 원중에서 사회자 1명을 두어 후보 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 · 대담을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 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 2.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 마다 각 1대·각 1조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 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u>외의</u>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 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말한다.

③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 2.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 마다 각 1대·각 1조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 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 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 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 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 후 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 ⑦제1항의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u>서면</u>으로 신고 <u>하여야 하며</u>,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 ⑨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ㆍ대담 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신분 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 ①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 바 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 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 후 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 ⑦제1항의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u>문서로</u> 신고<u>해</u> 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 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 ⑨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 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u>규칙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신 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 ①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 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 정 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①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 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 설 ·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① 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 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 정 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 ①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 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만 연 설 ·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① 녹화기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밎/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이라 함은'은 명사형 문장으로 '~이란'으로 바꾼다.
- * '외의'는 '이외의'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혀이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 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 장 · 주민회관 · 체육관 · 도로 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 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선박 · 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 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 내 및 지하철역구내
 -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순화안]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연설ㆍ 대담을 할 수 없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 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다만, 공원 · 문화원 · 시장 · 운동장 · 주민회관 · 체육관 · 도로변 · 광 장 또는 학교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렇지 않다.
 - 2. 선박 · 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 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 내 및 지하철역구내
 -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 연구시설
- * '각호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해당하는'은 다음의 '시설' 등을 꾸며 주므로 '해당되는'이 정확 한 표현이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 [순화안]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담·토론회) ①제87조(단체의 선거 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u>아니하는</u> 단 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 서 선거사무소 <u>또는</u>선거연락소마 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 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 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 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 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 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 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 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 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 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 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 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 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 답변하

초청 대담·토론회) ①제87조(단체 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 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 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 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이나 후 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 람중에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 소마다 지명한 1명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1명 또는 여 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 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u>밖의 사항을</u> 알아보기 위한 대 담·토론회를 이 <u>법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 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 동조합과 단체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서 "대담"이란 1명의 후 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나 질 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 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 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ㆍ정 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 하여 질문 ·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u>성</u> 명·사무소 <u>소재지</u>·회원수·설립 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 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 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 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 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담・토 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 이름 · 사무소 있는 곳 · 회원수 · 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의 이름,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이름, 진행방법, 개최일 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 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덧붙여야 한다.

④제1항의 <u>규정에</u>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u>제1항에 따른</u> 대담·토론회 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u>게시 또는</u> 덧붙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 보자에게 공평하게 <u>실시해야 하</u> 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u>하지 않</u> 은 경우에는 <u>그렇지 않으며</u>, 대 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 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 ⑦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⑧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 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 ⑨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약속을 할 수 없다.

- ⑦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⑧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 담·토론회에 준용된다.
- ⑨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해당하는'은 다음의 '단체' 등을 꾸며 주므로 '해당되는'이 정확 한 표현이다.
- * '아니하는'은 '않는'으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수인'은 '여러 명'으로 바꿀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이 법이 정하는'에서 법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 법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현이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이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이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혀이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소재지'는 '있는 곳'으로 바꾼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7에 따른'으로 한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순화안]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 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 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 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 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 다) 또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 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 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 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 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 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 기 위한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 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 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 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 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 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 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 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 의)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 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인터넷언론 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 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 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 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 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 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 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 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선거운 동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 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 · 토론회 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 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하며, 대담・ 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 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u>하여야 하며</u>, 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 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u>해야 하며</u>, 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④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 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 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 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에 준용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수인'은 '여러 명'으로 바꾼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통보하다'는 '알리다'로 바꿀 수 있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대통령<u>선거 및</u>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u>하여</u> 야 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u>1인 또는 수인을</u>
 초청하여 3회 이상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u>당해</u>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u>1인 또는 수인을</u> 초청하여 2회 이상
 -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 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u>하여</u> 야 한다.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 서 <u>당해</u>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 하는 <u>1인 또는 수인을</u> 초청하여 1회 이상
 -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

- [순화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u>1명이나 여러 명</u>
 을 초청하여 3회 이상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u>해당</u>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명이나 여러 명을 초청하여 2 회 이상
 -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 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u>해야</u> 한다.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명이나 여러 명
 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중에 서 <u>해당</u>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 하는 <u>1명이나 여러 명을</u> 초청하 여 1회 이상
 -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

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 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 설회를 <u>개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 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 등하게 배정<u>하여야 한다.</u>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 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 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 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u>5인</u>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 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 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u>
 <u>하는</u>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

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 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 설회를 <u>개최해야 한다.</u>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 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 등하게 배정<u>해야</u> 한다.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 항부터 제3항가지의 대담·토론회 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 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u>참석해야</u> 한다.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u>5명</u>이상의 소속의 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 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 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 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 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

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 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시·도의원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 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 정한 후보자
 -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 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 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 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u>아니하</u> 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 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

- 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 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시·도의원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 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 정한 후보자
 -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
 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
 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 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 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

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 석하지 <u>아니한</u> 초청 후보자가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u>당해</u> 후보자의 소속 정 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u>성명</u>과 불참사실을 제 10항 <u>또는</u>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u>하여야</u>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u>제1</u> 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 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 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 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 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 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u>자가</u>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 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 석하지 않는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 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 다)·기호·이름과 불참사실을 제 10항이나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 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해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u>제1</u> <u>항부터 제3항까지와</u> 제5항의 대 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u>해야</u> 한다.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 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 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 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 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 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 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때에 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 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 하여 중계방송<u>하여야 한다.</u>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u> 니하다.

①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u>규정에 의하여</u>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u>당해</u>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u>위원회는</u>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 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③『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 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 하여 중계방송<u>해야 한다.</u> 다만, 지 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 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①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u>규정에 따라</u>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각급선거방송토론<u>위원회가</u>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 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③『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u>규정에 따른</u>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해야 한다.

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 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 |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 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 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수인'은 '여러 명'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아니하는'은 줄임말인 '않은'으로 바꾼다.
- * '아니한'은 줄임말인 '않는'으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불응하다'는 '따르지 않다'로 바꿀 수 있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은 '~는 ~는'이 반복되어 어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각급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으로 바꾼다.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 [순화안]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 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 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 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 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 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 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 · 도의 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 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 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 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 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로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 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을 공표한 정당은 제외된다)의 대 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 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1. 국회에 5인명 이상의 소속의원 을 가진 정당
-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 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 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 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 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 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토론회)제7항부터 제9항까지·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준용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 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아니하다'는 '않다'로 바꾼다.
- * '정당을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정당은 제외된다'로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의미전달이 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 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u>자는</u>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 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 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준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u>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u>,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u>하여서는 아니된</u>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순화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이들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 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요청을 받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u>지</u>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u>날부터</u>,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u>자는 당해</u> 정 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 부·정지 또는 제한된 <u>날부터</u>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 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 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 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 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u>규정에 따른</u>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u>바</u>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일 안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유포'는 소문이나 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퍼 뜨림'으로 바꿀 수 있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인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꿀 수 있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순화안]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 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 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 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 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 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 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와는 달 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 해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 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 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 거운동정보에 밝혀야 한다.

-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2. 삭제
- 3. 삭제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 하 사항
-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 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u>경우에 한</u> 하여 전송할 수 있다.
-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u>자는</u>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 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 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 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삭제
- 3. 삭제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③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 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다.
-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 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 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 를 해서는 안된다.
-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 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 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 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 * '~에 반하여'는 '~와는 달리'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로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경우를 제외한다'에서는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경우는 제외된다'로 하는 것이 좋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명시하다'는 '밝히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경우에 한하여'는 '경우에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로 바꾼다.
- * '아니하도록'은 '않도록'으로 바꾼다.

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 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 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 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 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 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 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 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 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 [순화안]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 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 대화방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 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 로 개설·운영되는 인터넷홈페이 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 를 할 수 있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과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 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사람과

- 인터넷홈페이지별로 <u>관리하여야 하</u>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 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u>지체 없이</u>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u>자가</u> 글을게시한 경우 <u>당해</u>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u>하여야</u>한다.
- ⑤인터넷언론사는 <u>당해</u>인터넷홈 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u>자에게</u>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u>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u>
- ⑥인터넷언론사는 <u>당해</u> 인터넷홈 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게시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 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 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u> <u>이에</u> 따라 야 한다.

- 인터넷홈페이지별로 <u>관리해야 하</u>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u>바로</u> 따라야 한다.
-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u>사람이</u> 글을 게시한 경우 <u>해당</u>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 ⑤인터넷언론사는 <u>해당</u>인터넷홈 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u>사람에게</u>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u>요구</u> 해서는 안된다.
- ⑥인터넷언론사는 <u>당해</u> 인터넷홈 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u>바로</u> _ 삭제해야 한다.
-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 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 한 경우에는 <u>바로</u> _ 따라야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명의(名義)'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 * '운영하는'은 뒤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꾸며주므로 '운영되는'이 맞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불필요한 '이에'는 생략한다.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 | [순화안]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 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

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 거와 광고주명을 <u>표시하여야 한다.</u>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u>2인</u>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u>당해</u>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u>분담하되</u>,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 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 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 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u>나누어</u> 맡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 에 <u>밝혀야 한다.</u>

④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하고자하는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덧붙여서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제3항의 경우 그 분담내역을 포함한다)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u>문서로</u> 신고해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분담하다'는 '나누어 맡다'로 바꾼다.
- * '명시하다'는 '밝히다'로 바꾼다.

- * '첨부하다'는 '덧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①대통령 [순화안]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① 선거에 있어서 철도청장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 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 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청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철도청장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 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국용 무료승차 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사 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면 그 후 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청장 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대통령선거에서'로 줄일 수 있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혀이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반환하다'는 쉬운 우리말인 '돌려주다'로 바꿀 수 있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u>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u>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u>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울</u>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이란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거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로 고치 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표방하다'는 '내걸다', '내세우다' '주장하다' 등으로 고칠 수 있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 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 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 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 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순화안]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 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 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

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 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 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 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 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u>자에</u>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 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 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 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u>사람에</u> 대하 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 원과 그 보좌관 · 비서관 ·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 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 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 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 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 1. 소속직원 <u>또는</u> 선거구민에게 교육 <u>기타</u>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3. 정당<u>또는</u> 후보자에 대한 선거 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 를 발표하는 행위
-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

[순화안]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 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 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 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 리 ·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 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 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 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 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교육 <u>그 밖에</u>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사람을</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3. 정당<u>이나</u> 후보자에 대한 선거 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 를 발표하는 행위
-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이나 선거

- 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u>법령이 정하는 외의</u> 금품 기 탄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u>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5. 선거기간중 국가 <u>또는</u>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 업중 <u>즉시</u> 공사를 진행하지 아 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 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삭제
-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 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 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 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 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이 외의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그밖에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 5. 선거기간중 국가<u>나</u>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u>바로</u>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 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삭제
-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 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 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 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 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u>개최하는</u>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 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4. 다음 <u>각목의 1을</u> <u>제외하고는</u>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u>기타</u>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u>법령에 의하여</u>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u>하</u> 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지변 <u>기타</u> 재해의 구 호·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u>개최되는</u> 정당의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 4. 다음 <u>각목의 어느 하나를 제외</u> 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u>그 밖에</u>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u>법령에 따라</u> 개최하거나 후 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 최·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u>하</u> 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지변 <u>그 밖에</u>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 양강좌를 후원하는 <u>행위를 제</u> 외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행위
- 바. <u>가목 내지 마목에</u>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 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 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 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 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 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 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ㆍ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 양강좌를 후원하는 <u>행위는 제</u> 외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행위
- 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에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 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 하여 그의 직명 또는 이름을 밝히 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 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이 외의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 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 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 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선거구역이 <u>당해</u> 지방자치단체 | 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 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 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까지
-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 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 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 는 경우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 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 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 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 1.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 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 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 일까지
-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본다.
-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 기 등을 확대ㆍ변경하는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 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 는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 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 는 행위가 더하여지는 경우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 명 또는 <u>성명을</u>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기타의 홍 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 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 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 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 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u>자나</u> 관 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3. 집단민원 <u>또는</u>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4. 기타 위 <u>각호의 1에</u> 준하는 행

- 명 또는 <u>이름</u>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기타의 홍 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 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되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 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로 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 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 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u>사람이나</u>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3. 집단민원<u>이나</u>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4. 기타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u> <u>이 정하는</u>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당해</u>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 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 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u>규칙으로 정하는</u>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해당</u>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 * '의원을 제외한다'에서는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의원은 제외된다' 가 명확하게 의미전달된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로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법령이 정하는'에서 법령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법령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외의'는 '이외의'로 고친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 * '행위를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이해하기 쉽게 '행위 는 제외된다'로 바꾼다.
- * '즉시'는 '바로'로 바꾼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각호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해당하는'은 '해당되는'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제외하고는'은 어법상 '제외한'이나 '제외하고'로 바꾸어야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개최하는'은 어법상 '개최되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각목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목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법령에 의하여'는 '법령에 따라'로 바꾼다.
- * '~하지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하나에 정하는'은 '하나에서 정하는'이라고 바꾼다.
- * '기간 동안'은 기간이 동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기간에' 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본다'로 바꾼다.
- * '부가되다'는 '더하여 지다'로 바꿀 수 있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 | [순화안]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 항제4호 내<u>지 제6호</u>에 규정된 기관・단체
-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 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한다)
-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 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 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 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 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 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이름 또는 그 대표의 이름으로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 항제4호부터 제6호가지에 규정 된 기관・단체
-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 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한다)
- 5.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 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 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 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 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 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7. 삭제
-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 관 • 단체
-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 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 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 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7. 삭제
-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 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이름이나 내거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 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 '명의'는 '이름'으로 바꾼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 * '법령에 의하여'는 '법령에 따라'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명칭'은 '이름'으로 바꾼다.
- * '표방하다'는 '내걸다', '내세우다' '주장하다' 등으로 고칠 수 있다.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 | [순화안]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 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 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 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

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 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 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 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 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 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 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u>을</u> 할 때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을 함에 있어서'는 명사형의 문장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을 할 때'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 [순화안]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 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 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 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 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 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 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 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 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 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u>규정에</u>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 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그 밖의 명칭의 여하 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 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 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렇지 않다.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 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고지·광고는 그렇지 않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명의'는 '이름'으로 바꾼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 [순화안]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 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 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 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 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 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 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 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 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 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 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 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 · 마 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 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 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 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 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 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 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 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 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또 는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 용을 <u>밝히는 것은</u>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명칭'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명시하다'는 '밝히다'로 바꿀 수 있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 [순화안]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 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 의 규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 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삭제

-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u>규정에 의한</u>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u>규정에 의한</u>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u>규</u> 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 원회가 <u>교부한</u> 표지를 부착한 자 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 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 나 하게 할 수 있다.
-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삭제

-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 조의 <u>규정에 따른</u> 연설·대담장소 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 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u>규정에 따른</u> 선전벽보 등을 자동 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 정에 따른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 원회가 교부한나누어 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 (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 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 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교부하다'는 '나누어주다'로 바꿀 수 있다.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 거운동을 위하여 저술 · 연예 · 연 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 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 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순화안]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 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 시할 수 없다.

* '아니한'은 줄임말인 '않은'으로 바꾼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 [순화안]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 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 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 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 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 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 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 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이름 또 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 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 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 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 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 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아닌 때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u>기타</u>인 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u>징구하거</u>나 하게 할 수 없다.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대신 후보자가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한다)가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로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 극·영화·사진 그 밖에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 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 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 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 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 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u>기타</u>인 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u>내게하거</u> 나 하게 할 수 없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규정에 의하지'는 '규정에 따르지'로 바꾼다.
- * '아니하고는'은 '않고는'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인'은 '명'으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명칭'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아니한'은 '않은'으로 바꾼다.
- * '징구'는 금전, 서류, 곡식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징구하거나'는 쉬운 우리말인 '내게하거나' 혹은 '받 거나'로 바꾸어야 한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 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 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 * '아니한'은 '않은'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 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u>및</u> 제97 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 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u>또는</u> 불리한 기 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 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 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순화안]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누구든지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그 밖에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 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와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u>하거나</u>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u>란</u>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란'으로 바꾼다.

제96조(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방 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 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 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96조(허위논평 · 보도의 금지) 방 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 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이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 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 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 을 할 수 없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밎/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 | [순화안]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 한 행위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 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 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 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 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 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이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 품·향응 <u>기타의</u>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방송·신문·통신·잡지 <u>기타</u> 간 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집필·보도하는 <u>자는</u> 제1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금품·향 응 <u>기타의</u>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 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은 선거에 관한 보도 · 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 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에 간 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이나 그 보조자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③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에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없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순화안]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 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 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 나 하게 할 수 없다.

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 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 '규정에 의하지'는 '규정에 따르지'로 바꾼다.
- * '아니하고는'은 '않고는'으로 바꾼다.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 | [순화안]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 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 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선거기 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 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 * '규정에 의하지'는 '규정에 따르지'로 바꾼다.
- * '아니하고는'은 '않고는'으로 바꾼다.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 [순화안]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 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녹음기 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 * '규정에 의하지'는 '규정에 따르지'로 바꾼다.
- * '아니하고는'은 '않고는'으로 바꾼다.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 [순화안]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 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 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 시국 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 의 규정에 따른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여러 사람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 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 론회 그 밖의 연설회나 대담・토 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다수인'은 '여러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이 법 [순화안]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 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 |

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연설ㆍ 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 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 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 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 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 [순화안]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 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 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 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 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 도 개최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 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 최할 수 없다.

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 종 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는 그렇지 않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 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 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u>이름</u>의 모임 도 개최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 회나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 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명칭'은 '이름'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순화안]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 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 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 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 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 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 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 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 박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 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 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 용할 수 없다.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 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 [순화안]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 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 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 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 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 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 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을 초과하 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 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 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셈해 넣지 않는다.

-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 담)의 <u>규정에 따른</u>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이 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 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u>자가</u>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u> 하다. ②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u>사람이</u> 색상 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인'은 '명'으로 한다.
- * '산입하다'는 '셈해 넣다'로 바꿀 수 있다.
- * '~하지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 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

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 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 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 [순화안] 제106조(개**별가정의 방문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 또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 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 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 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 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 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 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는 선거기간∨중 입당 권유를 위 하여 개별가정에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 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 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설ㆍ대담을 알리기 위하여 개별가정에 방문할 수 없다.

- * 호별→개별가정
- * 기타 다수인→그 밖에 많은 사람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 [순화안]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 을 수 없다.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 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이름쓰기나 도장받기를 받을 수 없다.

- * '서명'은 '이름쓰기'로 바꿀 수 있다.
- * '날인'은 '도장찍기'로 바꿀 수 있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순화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 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 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 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

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로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 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 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 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 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 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름으로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 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 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 주소 또 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 자를 선정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

- 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 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 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3. 오락 <u>기타</u>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4. 피조사자의 <u>성명</u>이나 <u>성명</u>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 는 행위
-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 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 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 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 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 • 피 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 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 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 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 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 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 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3. 오락 <u>그 밖에</u>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4. 피조사자의 <u>이름</u>이나 <u>이름을</u>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 는 행위
-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 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 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 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 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 • 피 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 성 ·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 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 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명의'는 '사람'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각호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로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밎/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 [순화안]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 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 모사전송 <u>기타</u>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 82조의7(인터넷광고)의 <u>규정에</u> 따 른 광고에 한한다]·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 화의 경우를 제외한다<u>)에 의하는</u>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제1항 단서의 <u>규정에 의한</u> 전화 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u>이를</u>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 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제외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단서의 <u>규정에 따른</u> 전화 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_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없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하는'은 '규정에 따른'으로 바꾼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 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 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 [순화안]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 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 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 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개적으로 사실을 나타내어 사생 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 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의 무분별한 사용은 검토대상임.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
- * 공연히→공개적으로, 적시하여→나타내어
- *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법문에 쓰는 것이 바 람직함.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 [순화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 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 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 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 · 인 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u>기타</u>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보 고회 등 집회 · 보고서(인쇄물, 녹 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 인터넷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 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 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 동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 구역이나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 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 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 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접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 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 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 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붙여서 게시할 수 있으며, 알림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알림 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바로 철거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이름·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 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 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u>관하여는</u> 제46조(명부사본 의 교부)제3항<u>및</u>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 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 명단"으로 본다.

⑤의정보고회의 <u>고지</u>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 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 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u>관해서는</u> 제46조(명부사본 의 교부)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u>나</u>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 으로 본다.

⑤의정보고회의 <u>알림</u>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첩부하다'는 '붙이다'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는 '붙여서 게시할 수 있으며'로 바꾼다.
- * '고지'는 '알림'이라는 우리말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서면'은 '문서'로 바꾼다.
- * '관하여는'은 '관해서는'으로 바꾼다.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순화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 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 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 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 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 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 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 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 급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 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 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 금을 납부하는 행위
 -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 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

-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 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 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에 재 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해당 당 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 급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당헌 · 당규 그 밖에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 당의 당원이 당비 <u>그 밖에</u>부 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 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 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
 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
 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
 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
 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
 하는 행위
-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 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 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u>자</u> 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 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 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 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 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 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 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 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 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 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 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알립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 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의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 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 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u>사</u> 람에게 다과·떡·김밥·음료 (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 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 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 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 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 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 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 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 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 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 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2.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u>규정에 의한</u>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 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 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
 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
 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
 로서 <u>당해</u> 단체의 정관·규
 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
 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
 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 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

- 의 <u>규정에 따른</u> 친족의 관혼 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 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 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 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 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 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 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 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 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
 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
 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u>당해</u> 단체의 정관·규
 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
 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
 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 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

- 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 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 께 다니는 <u>자나</u>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 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에 함께 다니는 <u>자에게</u> 식사 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 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 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 니는 <u>자의</u>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 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 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 을 제공하는 행위
-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 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 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 께 다니는 <u>사람이나</u> 국회의 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 는 때에 함께 다니는 <u>사람에</u> 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 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 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 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u>사람의</u>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 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 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선거

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3. 구호적·자선적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재해구호법」의 <u>규정에 의</u>
 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
 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
 자사 조직법」에 <u>의한</u> 대한적 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 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 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 인복지시설)의 <u>규정에 의한</u>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 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의</u> <u>한</u>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 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u>기타</u>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 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 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 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가 직 접 수여하는 행위느 제외된다.
- 3. 구호적·자선적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 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재해구호법』의 <u>규정에 따</u> 를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 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 자사 조직법』에 <u>따른</u> 대한적 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 인복지시설)의 <u>규정에 따른</u>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 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따</u> 른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u>행위를</u> 제외한다.

-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u>또는</u>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u>법령에 의한</u>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u>수여를 제외한다.</u>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 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 구호사업 <u>또는</u>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u>또는</u>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u>당해</u>국가기관 <u>또</u> 는 지방자치단체의 <u>명의</u>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u>규정에 의</u> 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u>규칙이 정하</u> 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u>행위는</u> 제외된다.

-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u>나</u>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u>법령에 따른</u>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u>수</u> 여는 제외된다. 이하 나목에 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 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 구호사업<u>이나</u>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u>이나</u> 지방자 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u>해당</u>국가기관<u>이나</u> 지방자치단체의 <u>이름</u>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따 를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 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 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 를 이행하는 행위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

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

④삭제

는 것은 제외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 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 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 를 이행하는 행위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④삭제

것은 제외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 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 * '~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란'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규정에 불구하고'는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로서 '~불구하고'는 '~에도'와 어울리므로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고쳐야 한다.
- *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않는다'로 고친다.
- * '고지'는 쉬운 우리 말인 '알림'으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행위를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행위는 제외된다'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분명해진다.
- * '법령에 의한'은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 * '수여를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수여는 제외된다'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분명해진다.
- * '명의'는 '이름'으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제외한다'에서 주어는 '것을'으로 이해하면 '제외된다'로 하는 것 이 올바르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순화안]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 ①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 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 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 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 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 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 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 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 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 속 · 지시 · 권유 · 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 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 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 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 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 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 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 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 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 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순화안]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 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 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 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 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에 법 인 · 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 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에는 해당 선거에 관한 여부 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이름을 밝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 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회사 등을 말한다.
-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 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 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 · 단체
-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 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 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 • 단체
-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 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 금법』에 의한 후원회

-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 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사 등을 말한다.
 -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 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 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의 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그 밖에 법인 · 단체
 -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 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 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그 밖에 법인 • 단체
 -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 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 금법』에 의한 후원회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명의'는 '이름'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란'으로 바꾸 는 것이 좋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 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 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 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 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 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 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 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

[순화안]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 위제한)나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 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 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 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

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 [순화안]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 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 장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 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 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다) · 정당의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 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 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한다)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 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115조(제삼 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 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 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원, 대담·토론자, 제114조(정당 및 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제114 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 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 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 정에 따른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순화안]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 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 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 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 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 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부를 요구 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 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 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 [순화안]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 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 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 구민에게 축하나 위로 그 밖에 답 위하여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 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u>또는</u>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 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u>나</u> 낙선에 대한 위로 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각호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 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 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 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 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 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 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 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 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 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순화안]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 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

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u>드는</u> 금전·물품 및 채무 <u>그 밖에</u>

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 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 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 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 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ㆍ정 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 거사무장 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 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 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 으로 본다.

②이 법에서 "수입"<u>이라 함은</u>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u>기타</u>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u>이라 함은</u> 선 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 속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u>라 함은</u>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 로서 해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 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ㆍ정 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 거사무장 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 계책임자와 서로 짜고 해당 후보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 용으로 본다.

②이 법에서 "수입"<u>이란</u>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u>그</u>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약속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u>이란</u> 선거비용 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 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u>란</u> 『정 치자금법』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 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u>규정에 따라</u>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말한다.

- * '~(이)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이)란'으 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소요되다'는 비용이나 시간이 들다라는 의미이므로 '소요되는'은 '드는'이나 '걸리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통모하다'는 비밀히 서로 통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공모 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모하여'는 '서로 짜고'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니하는 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 한다.
 -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 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 [순화안]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 정되지 않는 비용)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 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 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 든 납부금 및 수수료
-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 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u>기타의</u>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 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 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확성장치 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4항 의 <u>규정에 의한</u> 자동차와 선박 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 7.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 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 계책임자와 <u>통모함이 없이</u>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 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8.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
 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기부행위
 로 보지 <u>아니하는</u> 행위에 <u>소요</u>
 되는 비용. 다만, 동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사목의 행위에 소

행위에 드는 비용

-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 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드는 정당비용
-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 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 든 납부금 및 수수료
-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그 밖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 치 및 유지비용
-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
- 7.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 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 계책임자와 <u>서로 짜지 않고</u> 특 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8.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
 2항의 <u>규정에 따라</u> 기부행위로
 보지 <u>않는</u> 행위에 <u>드는</u> 비용. 다
 만, 동항제1호 마목<u>과</u> 제2호 사
 목의 행위에 드는 비용은 제외

<u>요되는</u> <u>비용을 제외한다.</u>	된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잔무정리비용

- * '아니하는'은 '않는'으로 밖누다.
- * '각호의 1'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꾼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않는다'로 고친다.
- * '소요되다'는 비용이나 시간이 들다라는 의미이므로 '소요되는'은 '드는'이나 '걸리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통모하다'는 비밀히 서로 통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공모 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모함이 없이'는 '서로 짜지 않고'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비용을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없어서 어색하므로 '비용은 제외된다'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순화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 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 동수×200만원)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
 - 4.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 6. 시 · 도지사선거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 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 7.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 9.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 면·동수×100만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 동수×200만원)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억원+(인구수×20원)
-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 5.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 6. 시 · 도지사선거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 9.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 면 · 동수×100만원)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 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 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 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 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 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 다)을 적용하여 <u>증감할 수 있다</u>.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 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u>산정을</u> 위한 인 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한액을 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따른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올리고 내릴 수 있다.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③선거비용제한액 <u>계산을</u> 위한 인 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산정'은 더 쉬운 말인 '계산'으로 바꾸고 '산정하다'는 '셈하다'로 바꾸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증감하다'는 올리고 내린다는 이미이므로 '증감할 수 있다'는 '올 리고 내릴 수 있다'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 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셈한 선거비 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 야 하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산정'은 더 쉬운 말인 '계산'으로 바꾸고 '산정하다'는 '셈하다'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순화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

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 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 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 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 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 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 전한다.

-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 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 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 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 비례대표국회의원<u>선거 및</u>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교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 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 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 비례대표국회의원<u>선거와</u>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u>당해</u>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 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 고서에 보고되지 <u>아니하거나</u> 허 위로 보고된 비용
-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4. 후보자등록기간 중 제135조(선 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 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u>자에게</u>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 당・실비 그 밖의 비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 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 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 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u>해당</u>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 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를 보전하지 <u>않는다.</u>

-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 고서에 보고되지 <u>않거나</u> 허위로 보고된 비용
-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4. 후보자등록기간 중 제135조(선 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 비보상)제1항에 규정된 <u>사람에게</u>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이 법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 당·실비 그 밖의 비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 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 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
-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 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이나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

-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 의 비용
-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u>아니한</u>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 구입·제작비용
- 9.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 료 및 정보이용요금
-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제64조(선전벽보)의 <u>규정에 의한</u>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 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 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 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 의 비용
-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u>않은</u>차 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 입·제작비용
- 9.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 료 및 정보이용요금
-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제64조(선전벽보)의 <u>규정에 따른</u>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 공보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 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 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따

-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 6.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 7.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른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u>규정에 따른</u>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 6.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 7.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아니하다'는 '않는다'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 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 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 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순화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다.

③이 법의 <u>규정에 따라</u>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당・실비 <u>그 밖에</u> 자원봉 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 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금품 <u>그 밖의</u> 이익의 제공 또 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 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대하여는'은 '대해서는'으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순화안]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연 선거비용을 <u>보전함</u> 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 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 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 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 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 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 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 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 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 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당해 선거 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 금법』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제한)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 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 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 지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용 을 보전하지 않는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장 또는 선 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해당 선 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 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서 규정된 죄 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 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 에 든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 전하지 않는다.

③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선 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 자금법』 <u>제49조에서 규정</u>된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 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넓업하여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 견된 때에는 <u>해당</u> 정당이나 후보 자에게 그 사실을 <u>알리고</u> 보전비 용액중 <u>제1항이나 제2항의</u>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u>날로부터</u> 30 일 <u>안에</u> <u>해당</u>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_ 반환해야 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나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u>해당</u>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 방자치단체에 납입해야 한다.

⑥보전하지 않은 비용의 계산 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함에 있어서'는 명사형의 표현으로 일상 생활에서는 잘 안 쓰인 다. 따라서 '보전함에 있어서'는 '보전할 때'로 바꾼다.
- *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않는다'로 고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에 규정된'은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범함으로 인하여'는 '범하여'로 바꾼다.
- * '소요되다'는 시간이나 비용이 들다라는 의미이므로 '들다, '걸리 다'로 바꾼다.
- *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는 다'로 바꾼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통지하다'는 '알리다'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날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날부터'는 '날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이내에'는 '안에'로 바꾼다.
- * '산정'은 '계산'이나 '셈'으로 바꿀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제136조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 [순화안] 제136조 (회계장부 그 밖의 존) ①회계책임자는 제129조(회계 장부의 비치ㆍ기재)의 회계장부와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 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서류보존) ① ∨ 회계책임자는 제129 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의 회계 장부와 제130조(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의 영수증 그 밖의 증명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3년 동안 보 존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부 │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 부 그 밖의 증명서류 보존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류의 보존→'서류보존', 연결조사인 '의'의 사용이 불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음.
- * '증빙서류'→'증명서류'로 순화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순화안] 제137조(정강·정책의 신

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 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 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 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 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 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 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 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 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 회 이내
-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 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 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 에 총 20회 이내
-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 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 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 원 ·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 다) 또는 선거에 있어 해당 정당 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 도안 · 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 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 의 범위안에서 해야 하며, 그 선 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 일전 90일로부터 선거기간개시 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 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 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 에 총 20회 이내
-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

-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 문 등에 총 10회 이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 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u>자의</u> 사진·성명(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 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 재할 수 없다.
- ③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 회수를 말한다)·제2항(광고의 색 도와 규격을 제외한다)·제4항 내 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 문 등에 총 10회 이내
- ②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 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u>해야 하며</u>,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사람의</u> 사진·<u>이름(이름을</u>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③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회수를 말한다)·제2항(광고의색도와 규격을 제외한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u>준용된다</u>.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재선거를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재선거는 제외된 다'로 바꾼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내지'는 '~부터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 로 실제 일반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로 바 꾸는 것이 좋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순화안]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 의 제한) ①정당이 방송연설[제70 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 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 <u>에</u>서 지명한 <u>자가</u> 행하되, 선거 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 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 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송연설의 제한)** ①정당이 방송연 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 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 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 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 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 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u>하여서는 아니되며,</u>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u>당해</u> 방송시설을 이용<u>하여야 한다.</u>
- ③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방송연설을 <u>함에 있어서는</u>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u>하여서는</u> 아 니된다.
-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u>당해</u>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 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 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 일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회) 이내
 -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된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 ②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 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 른 내용이 방영되게 <u>해서는 안되</u> 며,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 고자 하는 때에는 <u>해당</u> 방송시설 을 이용<u>해야 한다.</u>
 - ③제1항의규정에 따른방송연설을 <u>할 때는</u>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용의연설을해서는안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연설의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

 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

 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 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 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 의 일시·시간대 <u>기타</u> 필요한 사 항은 <u>당해</u> 공영방송사와 <u>당해</u> 정 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⑥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 6항 및 제8항과 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u>이를 준용한다.</u>
- ⑦제6항의 <u>규정에 의한</u> 방송연설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u>제</u> <u>작비용은 제외된다</u>)은 <u>해당</u> 공영 방송사가 __ 부담<u>해야</u> 한다.

- ⑤제4항의 <u>규정에</u> 따라 공영방송 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u>그 밖에</u> 필요한 사 항은 <u>해당</u> 공영방송사와 <u>해당</u> 정 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⑥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 6항 및 제8항과 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u>준용된다.</u>
- ⑦제6항의 <u>규정에 따른</u> 방송연설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재선거를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재선거는 제외된다'로 바꾼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로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다.
- * '함에 있어서는'은 명사형의 표현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할 때는' 으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제작비용을 제외한다'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므로 '제작비용은 제 외된다'로 바꾼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불필요한 '이를'은 생략한다.
- * '준용한다'에서 주어를 '규정'으로 이해하면 '준용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 [순화안]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 한 등)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 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 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 | 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 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 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 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 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 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때에 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 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선거기 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 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 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 물 1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 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 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 속당원에 해당하는 수를 넘지 못 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 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때에 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

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정책홍보 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 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 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 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성 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 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 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해야 한다.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정책홍보 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 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 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 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 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이 름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 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 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 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상당하는'은 '해당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등)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 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 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 |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순화안]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 부제한 등)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 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 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 상적인 방법으로 판매<u>하여야 한</u> <u>다</u>.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 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②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 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 당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 소 · 선거연락소와 제79조(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 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에 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③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 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 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 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u>해야한다</u>.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②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③정당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해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이름·사진·학력·경력 등 후보 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⑤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 | 한) ①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 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 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 · 대담장소 또는 대담 · 토론회 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 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 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

[순화안]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 행·배부제한) ①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 법외의 방법으로 발행 ·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 인 때에는 2회(증보·호외·임시 판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 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 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 지 않는다.

②제1항의 기관지에는 해당 정당

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 사진 · 학력 · 경력 등외에 후보자 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배부하 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 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 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이름ㆍ 사진 • 학력 • 경력 등외에 후보자 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배부하 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 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해야 하다.

- *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않는다'로 고친다.
- * '당해'라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의 제한) ①정당이 선거일전 120 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 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순화안]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 최와 알림의 제한) ①정당이 선거 일전 <u>120일(</u>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 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 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 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제10조(창당집회의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경우 신문공고·표지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에서 "개편대회"<u>라 함은</u>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 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 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u>자를</u>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하되, 사회통념상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경우 신문공고·표지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를</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이름(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 개할 수 없다.

③제1항에서 "개편대회"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 하고, "후보자선출대회"란 정당의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57조 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u>지체없이</u> 주최자가 <u>철거하여야 한다.</u>

각급 당부가 이 <u>법에 따른</u>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 시)의 <u>규정에 따라</u> 개최하는 집회 를 말한다.

④제2항의<u>규정에 따른</u>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u>바로</u> 주최자가 <u>철</u> 거해야 한다.

- * '고지'는 '알림'으로 바꿀 수 있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다수인'은 '여러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이)라 함은'은 명사형의 문장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이)란'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 '이 법에 의한'은 '이 법에 따른'으로 한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순화안]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 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 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 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 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 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 한다.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 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 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선거일전 30일로부터 선 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 련 · 연수 ·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 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 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 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 로 보지 않는다.

②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정 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 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에 공공 시설 또는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 최해야 한다.

③『정치자금법』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 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 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 진 · 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 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정치자금법』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나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정당이 보상해야 한다.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따른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바로 철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이를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규격 또는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일부터'에서 '~부터'는 시작을 의미하는 조사로 앞에 받침이 없 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로부터'가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부터'는 '일로부터'가 올바른 표현이다.
- * '~하지 아니한다'는 줄임말인 '~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다수인'은 '여러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 * '하여야 한다'는 줄임말인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꾼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혀이다.
-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 * '첩부하다'는 '붙이다'로 바꿀 수 있다.
- *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
- * '자'는 '사람'으로 바꾼다.
- * '성명'은 '이름'으로 바꾼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줄임말로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다.
- *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 [순화안]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 · 개편대 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 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중 | 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3인 을 넘을 수 없다.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 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 당의 창당이나 개편을 위하여 창 당대회 ·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 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렇지 않다.

② V 정당의 시·도당은 선거기간 ∨중에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을 둘 수 있다. <u>다만</u>, 그 교체는 <u>3</u> 명을 넘을 수 없다.

* '및/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법령문에는 많이 쓰 여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및/또는'을 사용하면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이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바꾸어 쓴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 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 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 [순화안]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 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 항과 <u>당해</u> 당부명 및 그 대표자성 명을 게재한 간판 · 현판 또는 현 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 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합하여 모두 4개 이내로 한다.

②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당부 명 및 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 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규칙에 따라 해당 당 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ㆍ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합 하여 모두 4개 이내로 한다.

②∨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 * '기타'는 '그 밖에'나 '그 밖의'로 바꾼다.
- * '당해'란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해'란 '그'라는 의미로서 어떤 규정 중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여 그것이 앞에 열거된 특정의 대상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관사로서 사용된다. 또한 '당해'는 그 곳 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당 해'는 '그'나 '해당'으로 바꿀 수 있다.
- * '규칙이 정하는'에서 규칙은 그 자체가 행위주체가 되어 무엇을 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규칙으로 정하는'이 올바른 표

현이다.

제146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 [순화안] 제146조**(선거방법)** ① V 선거 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는 기표방법에 따른 투표로 한다.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u>투표를 함에 있어서는</u> 선거인의 성명 <u>기타</u>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 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순화안] 제146조(선거방법) ① V 선거는 기표방법에 따른 투표로 한다.
② V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며, 한 V 사람이 한 V 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V 선거, 시 · 도의원 V 선거와 자치구 · 시 · 군 V 의원선 거는 지역구 V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V 의원선거마다 한 V 사람이 한 V 표로 한다.

③∨<u>투표는</u> 선거인의 성명 <u>그 밖</u><u>에</u>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 를 해서는 안된다.

- * 의한→따른
- * '~를 함에 있어서는'는 투표를 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미 '투표'의 의미에 행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문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되므로 생략함.
- * 1인 1표→한∨사람이 한∨표
- * 하여서는 아니된다→해서는 안된다.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u>투표에 관한</u>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 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순화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u>투</u> 표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 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 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읍·면· [순화안]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 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 면 · 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 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 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 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 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 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 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 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참 관인의 좌석 그 밖의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까지 관할 구역 안 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② > 투표소는 투표구 >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 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그 밖에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 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해당 투 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 한 장소가 없으면, 가까운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관공<u>서·공</u>공기관·단 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 조요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응하 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 하지 못한다.

⑤ V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에 투표관리 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 ⑥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u>하여서는 아니된다.</u> ⑦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u>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u> 요구할 수 있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읍·면·동선 거관리위원회는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
-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u>위촉하되</u>, 選舉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u>에 규정된</u>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 조<u>에 규정된</u>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 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 을 제외한다.
- 2. 각급학교의 교직원
- 3. 은행법 제2조<u>의 규정에 의한</u> 금융기관의 직원
-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 ⑥ ∨ 기표소는 <u>그 안을 엿볼 수</u> 없 도록 <u>설치하며</u>, 어떠한 <u>표식도</u> <u>해</u> 서는 안된다.
- ⑦∨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u>투표소 설비를</u>제대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⑧제1항에 따라서 투표소를 설치 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 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바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읍・면・동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며, 선거일 ∨전 3일까지 그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국가공무원법」제2조의 국가 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의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 >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2. 각급∨학교의 교직원
- 3. 「은행법」 제2조<u>에 따른 금융기</u> 관 직원
- 4.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u>자</u>

⑩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u>기타 필요한 사항은</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호까지의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u>사람</u>

① V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u>그 밖의 사항</u>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으로 정한다.

- * 전일까지→하루∨전까지
- * 인접한→가까운
- * 결정에 의하여→결정으로
-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u>요구를</u>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u>요구</u> 를 받은 학교·관공서·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응 하여야 한다.<대안>
- * 설비하여야 한다→설치한다
- * 기표소는 <u>그 안을 다른 사람이</u>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u>하여서는 아니된다.</u>→기표소는 <u>그 안을 엿볼 수</u> 없도록 <u>설치하며</u>, 어떠한 <u>표식도</u> <u>해서는 안된다</u>.
- * <u>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투표소 설비를 제대로 할 것을</u> <시정 是正 : [명사]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 천재·지변 <u>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u>→천재·지변 <u>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u>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바로
- *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보조를 위하여
- * ~에 규정된→~의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 | [순화안]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 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 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 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 소"라 한다)를 <u>당해</u> 사무소 소재 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管 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 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 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 마 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u>항 및</u> 제2항<u>의 규정에</u>의하 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 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 재지<u>및</u>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 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 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부재 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

치) ①∨관할∨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는 선거일 \ 전 6일부터 2 일 동안(이하 "부재자∨투표기간" 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 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 를 해당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 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으면 부재자∨투표 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 는 관할구역∨안의 부재자∨투표 예상자의 수와 분포 >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 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부재 자∨투표소를 설치하려면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u>와</u> 설치 ·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알 려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 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부친다. 부재자∨투표소 설치장소의 변경 도 이와 같다.

에도 또한 같다.

-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u>3人</u>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경우 在籍政黨推薦委員은 <u>그가</u> 참여를 포기하지 <u>아니하는</u> 한 모두지정한다.
-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 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 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u>자</u> 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 원을 두어야 한다.
- ⑥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⑦부재자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3 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1항과 제2항 의 부재자 〈투표소에도 적용한다. ⑦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 · 공고 · 통보 및 부재자 〈투표사무원의 위 촉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부재자 不在者 [명사]1 그 자리에 없는 사람. 2 <법률>주소지를 떠나 있어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 *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u>→<u>필요하면</u>
- * 첩부하여야 한다→부친다
- *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부재자∨

투표소 설치장소의 변경도 이와 같다.

- 소) ①不在者投票期間중 부재자신 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 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의 長은 管轄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 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재 자신고인수・설치사유・소재지 등 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 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 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 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 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부재자투 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준하 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행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

-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 | [순화안]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 **재자투표소)** ①∨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 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 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 시 · 군 ∨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 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서 기관 또는 시 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하려면, 그 부재자신고인수 ·설치 사유・소재지 등을 명시하여 선거 일∨전 10일까지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 하면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 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알 려야 한다.
 - ③∨제1항<u>에 따른</u> 부재자∨투표소 의 투표관리는 제148조(부재자∨ 투표소의 설치)∨제4항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 / 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행한다.
 - ④∨제1항에 따라서 부재자∨투표 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

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 게 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 을 두어야 한다.

- ⑤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 내 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 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 ⑥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 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 자∨투표사무<u>의 보조를 위하여</u> 부 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⑤∨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 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1항의 부재 자∨투표소에도 적용한다.
- ⑥∨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 의 신청 및 허가 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다.
- *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하려면
- *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정당하면
-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 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도 **적용**한다.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순화안]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 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 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 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 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 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투표 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 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 하고, 비례대표 / 국회의원 / 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 와 정당명을 표시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 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 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간일 현재 국

③우보사의 게재단위<u>을 성압에 있어서는</u>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u>순으로</u>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이나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 多數 養席順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u>따라서</u> "1, 2, 3" 등으로 <u>표시하며</u>,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u>적는</u> <u>다</u>.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같은 후보자가 <u>있으면</u> 괄호속에한자를 함께 <u>적는다</u>.

③ \ 후보자의 게재순위의 결정은 후보자 \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서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의 결정은 후보자 \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순서로 한다.

① V제3항에 따라서 관할 V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하는 경우후보자 V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V순서로 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이면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V국회의원 V선거의 득표수 순서로 하며,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 黨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 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 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 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 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 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 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국회에 <u>5인</u> 이상의 소속 지역 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 한 정당
- ⑥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

- ⑤ V제4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 V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부여한다. 다만, 지역구 V자치구·시·군의원 V선거에서 전국적으로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V순서에 따라 "1-가, 1-나, 1-다" V등으로 표시한다.
- 1. 국회에 <u>다섯 사람</u>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을 득표한 정당
- ⑥ V 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으면, 소속정당의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 V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V 등록마감

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 <u>니하는 경우</u>에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 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 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 하지 아니한다.

⑧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추 가등록)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 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 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 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 위로 한다.

⑨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 하여야 한다.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 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 여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그 정당 또는 후보 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 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 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없애지 않는다.

⑧∨대통령선거에서 제51조(추가 등록)에 따른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 미 결정된 해당 정당추천∨후보자 의 게재순위로 한다.

⑨∨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 쇄한다.

- * 기재한다→적는다
- *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게재순위의 결정은
- *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의석이 없는
- * 말소하지 아니하다→없애지 않는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순화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 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 거일<u>전일까지</u> 읍·면·동선거관리 위원회에 <u>송부하며</u>, 이를 <u>송부받</u> 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 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u>에 있어</u> <u>서</u>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부 재자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 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u>하되</u>, 그 수는 부재자신 고인수를 <u>감안하여</u> 당해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u>청인</u> 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u>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u> 갈음 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u>하루 전까지</u>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u>보내며</u>, 이를 <u>받은</u> 읍·면·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 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 께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한다.

② V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u>에서</u>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 하 "부재자〉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 다)은 따로 작성<u>하고</u>, 그 수는 부 재자〉신고인수를 <u>고려하여</u>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다.

④ V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V 규칙에 따라 관할 V 구·시· 군 V 선거관리위원회의 푸른색 도 장을 찍는다. 단, 그 푸른색 도장 은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

 원이 참여하지 <u>아니한 때에는 입</u>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 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 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 작 · 사용할 수 있다.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시각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 거인에게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에 따라 특수투표용 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 용할 수 있다.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전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송부하며→보내며
- *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 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서 투표함은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1개만을 사용한다.
- * 감안 [勘案][명사]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생각', '고려', '참작'으로 순화
- *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푸른색 도장을 찍는다
- *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그 푸른색 도장은 인쇄로
- * 참여하여 입회하게→참석하게, 입회→참석
- *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시각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필요하면
- * 인계→전달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 [순화안]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 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 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 거일∨전 7일까지 공고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바로 그 인쇄소의 명칭 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가 결정되면 바로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 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 는 시간·투표할 때 <u>가지고 가야</u> 할 지참물 <u>기타</u> 투표참여를 권유 하는 내용 등이 <u>기재된</u> 투표안내 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u>매세대</u> 에 발송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 에 의할 수 있다.
- ④투표안내문의 서식·<u>규격</u> 게재 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u>기타 필요</u>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② V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u>발송</u> <u>우편요금은</u> 국가 또는 <u>해당</u>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 직<u>으로 할</u> 수 있다.
- ① <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u>과</u> 게 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u>그 밖의</u>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 으로 정한다.
- * 송부 [送付] [명사]편지나 물품 따위를 부치어 보냄. 발송 [發送] [명사]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보냄.
- *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보낼 때에 함께 보낼 수 있다.
- * 매세대→모든 세대

용지의 발송) ①부재자신고인명부 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 한 부재자신고인의 거소・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 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 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 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 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 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 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 | <u>니할</u> 수 있다. <u>이 경우</u> 부재자투 | 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 [순화안]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 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부재자 ∨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정당추천위 원의 참여 아래에 투표용지의 일 련번호를 자른 후 바코드(부재자 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 > 신 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 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 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 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 라 있는 선거인에게 보낸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 하지 않으면 참여을 포기한 것으 로 본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과 자신의 의사로 신 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 자∨신고인에게는 해당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부 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재자∨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③ ∨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부재자신 고인과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 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 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 <u>금은</u> 국가 또는 <u>당</u>해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 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 을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 송하여야 한다.

⑥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는 제2항에 따라서 부재자∨투표 용지를 보내지 않은 부재자∨신고 인과 선거일 V전 2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가 되돌아 온 부재자∨ 신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 ✓하루 전까지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며, 우편 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방법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용지와 함 께 보낸다.

⑥∨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 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으로 정한다.

- * 절취(截取) [명사] 잘라 냄. '자르기', '자름'으로 순화.
- * 공보 [公報] [명사] 1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림.
 - 2 지방 관청이 관보(官報)에 준하여 발행하는 문서. 3 관청 사이 의 보고.
- * 반송된→되돌아 온
- *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함께 보낸다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 [순화안] 제155조**(투표시간)** ① \ 투

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 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단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 오전 10시에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

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 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 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 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부재자신고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하여야 한다.

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

오후 6시(보궐선거 ∨ 등은 오후 8 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 에게는 번호표를 <u>주어</u>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V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에 따른 부재자 V 투표소는 부재자 V 투표기간 V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다만, 제 1항 단서는 부재자 V 투표소에도 적용한다.

③ V 투표를 <u>시작할</u> 때, 투표관리 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 V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며, 이때에는 투 표참관인이 <u>참관한다</u>. 다만, 투표 <u>시작시각</u>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 하지 <u>않으면</u>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에게 참여하게 한다.

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보궐선거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까지 관할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 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투표소에서 대기하 고 있는
 - '투표하기 위하여'는 불필요한 설명문으로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음.
- * 부여하여→주어
- *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 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투표를 시작할 때,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며, 이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한다.

제156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 | [순화안] 제156조**(투표의 제한)** ① V 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제42조(불복신청과 결 정)제2항 또는 제43조(명부누락자 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 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 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u>자</u>는 투표 할 수 없다.
-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에 의하지 아

선거인명부에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제43조(명부누 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 있 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사 람은 투표할 수 있다.

- ② V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 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 표할 수 없다.
-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로만 투표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 표용지의 발송)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자신고인명단과 대조 · 확인하고, 선 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 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제154조(부재자 ∨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 송)∨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과 부 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 자∨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투 표관리관은 제154조∨제3항에 따 른 부재자∨신고인명단과 대조ㆍ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없는 사람은
- * 부재자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부재자투표로 만 투표할 수 있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순화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 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 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 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 허증 ·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 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직접 투 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 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으 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 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 명서"라 한다)을 제시하여 본인임 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 <u>또는 무인하고</u> 투표용지를 <u>받아야</u> <u>한다.</u>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투표관리관은 <u>신분증명서를 제</u> 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 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u>그</u>선 거인에게 책임<u>이</u> 있는 사유로 <u>훼</u> <u>손 또는 오손된</u> 때에는 <u>다시 이를</u>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u>명 후 도장 또는 지장을 찍고</u> 투 표용지를 <u>받는다</u>.

② 〉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 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 장찍는 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 은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고, 필요 하면 100매 이내의 범위 〉 안에서 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다.

③ V 투표관리관은 <u>신분증명서를 제</u> 시한 선거인에게만 투표용지를 교 부한다.

④ V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 의 후보자(비례대표 V 국회의원 V 선거 및 비례대표 V 시·도의원 V 선거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u>않게</u>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V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_선거 인에게 책임_있는 사유로 <u>못쓰게</u> <u>되거나 더렵혀진</u>때에는 <u>다시 교</u> <u>부하지 않는다</u>.

⑥ V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 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 등학생인 <u>어린이는</u> 기표소를 제외 한다) V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 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 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 조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 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으로부터 투표를 보조 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을 제외하고 같은 기표 소∨안에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도장찍기·교부방 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 * 무인 [拇印] [명사]=지장(指章).
-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서명 후 도장 또는 지장(손도장)을 찍고
- * 첩부되어→붙어 있는
- *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도장찍는 란에 개인도장을 찍은 후
- *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 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 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 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수 령·보관 및 투표소에서의 관리시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때 도장찍는 란에 위원장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고, 필요하면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의 도장을 미리 찍 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다.

한편,(②-1)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 회의 다수의석 순서에 따라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명에게 투표용지의 수령 · 보관 및 투표소에서의 관리에 참석하게 한 다. 다만, 해당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참석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 * 훼손 또는 오손된→못쓰게 되거나 더렵혀진
- *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제6항을 제외하고
- * 2인 이상이 동시에→2명 이상이 같이

제158조(**부재자투표**) ①부재자신고인 [순화안] 제158조(**부재자투표**) ① V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 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소에 가 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 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 표관리위원등"이라 한다)과 부재 자투표참관인앞에서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 송용 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 분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 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부 재자∨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 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등"이라 한다)과 부재자∨투표 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발송용 겉 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 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 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겉봉 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참 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 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 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 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은 부재자 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 감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 에 부재자투표함을 <u>개함하고</u> 부재 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 국장에게 <u>인계하여</u>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 절차)제6항 <u>및</u> 제7항<u>의 규정은</u> 부 재자투표소<u>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u> 용한다.

④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구・

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비 례대표 / 국회의원 / 선거 및 비례 대표∨시・도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 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 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 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 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부재자∨ 신고인만 투표하게 한다.

③ V 제157소(두표용시수당 및 기 표절차) V 제6항<u>과</u> 제7<u>항은</u> 부재자 V투표소<u>의 투표에도 적용한다.</u>

④∨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 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 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 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터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 기우편으로 보낸다.

⑥∨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 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 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부재자∨신고인만 투표하게 한다.
- * 개합하→열어본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 [[순화안]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 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 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 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할 때에는 "○"표를 할 수 있다.

* 각인된→새겨진

제161조**(투표참관)** ①투표관리관은 투 [순화안] 제161조**(투표참관)** ① ∨ 투 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에게 투표 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 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 보자마다 투표소별로 <u>2인</u>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u>신</u> 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12인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관하도록 한다.

② \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u>두 명을</u> 선정하여 선거일 \ 전 2일까지 읍· 면·동 \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12명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서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으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지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이를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읍・면・동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서 투표참관인을 지정할 때, 후보자수가 12명을 널으면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으로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지만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으면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으로 지정한다.

⑤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u>그가</u> 선정한 투표 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 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 체신고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u>의 규정에 의하여</u>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 년자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u>자</u>)제 1항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자 · 제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u>각</u>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후보자 또 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 이 될 수 없다.

⑧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u>관리를</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 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u> 정당・후 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 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투표참관인<u>석을</u> 마련하 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u>기타</u>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⑤ V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필요하면 선정한 투표참관인을 언제든지 읍·면·동 V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u>에 따라서</u>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 할 수 없다.

① ∨ <u>외국인</u> · 미성년자 · 제18조(선 거권이 없는 <u>사람</u>) ∨ 제1항 각 ∨ 호 <u>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사람</u>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1 항 각 ∨ <u>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u>사람</u>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u>관리</u> 에 필요하면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u>다만</u>, 정당・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 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 <u>자리를</u> 마련하여야 한다.

① V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 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u>그 밖에</u> 어 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IV. 공직선거법 순화안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 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 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 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4]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⑪∨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 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 <u>구한 경우</u>,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 가 정당하다면 시정하여야 한다.

⑩∨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 하면,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⑭∨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투표관리에 필요하면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
-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 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시정하여야 한다.

제162조(부재자투표<u>참관)</u> ①부재자투 | [순화안] 제162조(부재자투표<u>참석</u>) ① 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 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 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 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

<u>금</u> 부재자투표상황을 참관<u>하게 하</u> 역야 한다.

②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8일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 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 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부재자투표참 관인으로 한다.

④第161條(投票參觀)第6項·第7項·第9項 <u>내지</u> 第12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參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 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 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 관인<u>에게</u> 부재자∨투표상황을 참 관시켜야 한다.

③ V제2항에 따른 부재자 V투표참 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 V투표참관인밖에 없으면 관할 V구·시·군 V선 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V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네 명에 이를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부재자 V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V 제161조(투표참관) V 제6항·제 7항·제9항부터 제12항은 부재자 V 투표참관에도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V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V 구·시·군 V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 V 투표관리 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

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 참관인"으로 본다.

⑤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 으로 본다.

⑤∨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으로 정 하다.

- * ~으로 하여금→~에게. ~하게 하여야→~시켜야
- *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 소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제 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투표일∨전 2일(그 부재자 투표소는 법 문에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중복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 하여 삭제함)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순화안]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 투표하려는 선거인 · 투표참관인 ·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 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 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 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

제한) ①∨투표하려는 선거인·투 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 동∨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투표 사무원만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② V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 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 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에 따른 표지 이외에는 선거와 관련 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 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수 없다.

-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 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 ④∨제1항부터 제3항은 부재자∨ 투표소에도 적용한다.
- * ~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만이 투표 소에 들어갈 수 있다.
 - (이중부정을 통한 법문을 긍정문으로 바꿈)
- * 표지(標識)[명사] 1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 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표식(?: 標識)
-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 | [순화안]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 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 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를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 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 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 | 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 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유지) ①∨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는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 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서 원조요청을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 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제1항의 요청에 따라서 투표 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 를 받으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 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투표소∨안에서 물러나야 한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 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 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不在者投票事務員" 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 長"은"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 察官署長"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은 부재자∨ 투표소에도 적용한다. 다만, "투표 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 원"은 "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察官署 長"으로 본다.

- * 요구할→요청할
- * 퇴거하여야→물러나야

지) ①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 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순화안]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①∨제164조(투표소 등 의 질서유지)∨제1항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제1항은 부재자∨투표소에도 적용한다.

*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을 제외하고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 [순화안]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금지 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 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 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 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 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 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

소란언동금지 등) ①∨투표소 또 는 그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 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 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 고, 그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u>퇴거하게</u> 할 수 있다. 이 경우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u>필</u>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2항 및 제3항<u>의 규정은</u> 투표소 <u>내외에서의</u> 소란언동금지 <u>등에 이</u> <u>를 준용</u>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부 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 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不在者投票事務員" 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 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察官署長"으로, "選舉日에"는 "不在者投票所안에서"로 본다.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u>물러나</u> 게 할 수 있다. 이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u>필요하면</u> 정복 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u>요청</u>할 수 있다.

② V 제1항에 따라서 물러난 선거 인은 <u>마지막에</u> 투표하도록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 를 문란하게 할 <u>염려가 없으면</u> 그 전에라도 투표<u>하도록</u> 할 수 있다.

④ ∨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 지) ∨ 제2항 및 제3<u>항은</u> 투표소 ∨ 내외의 소란언동금지 <u>등에도 적용</u> 한다.

⑤ V제1항부터 제4항은 부재자 V 투표소에 도 적용한다. 다만, "투 표관리관"은 "부재자 V 투표관리위 원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 무원"은 "부재자 V 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 은 "경찰공무원 · 헌병 또는 경찰 관서장"으로, "선거일에"는 "부재 자 V 투표소에서"로 본다. *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투표소 또는 그 100미터

<장소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에 '안에서'를 중복적으로 표시하는 것 은 부적절하고, 투표소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마지막에 투표하도록 한다
- * 우려→염려
- * 경우를 제외하고는→것을 제외하고
- * 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흉장(胸章) 등을 착용하는 방법 으로

(흉장 [胸章] [명사]군인이나 관리 들의 가슴에 다는 표장(標章). '가슴표'로 순화.)

* 미칠 우려가 있는→미칠 수 있는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 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 레비전방송국 · 라디오방송국 · 『신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순화안]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V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

> ②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 명이나 정당명을 누구 또는 어떤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 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용 어의 정의)∨제2호에 따른 일간신 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 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 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 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 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 지 <u>그 경위와</u>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 표지는 무효로 한다.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 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과정과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 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다.

- * 보장되어야 한다→보장된다
- *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질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 경위(經緯:2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정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 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 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 의 참관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 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쇄・봉인 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u>의 규정</u>에 의하 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순화안]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에 그 입구를 닫아야 하 며, 투표소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 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보는 앞 에서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 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 쇄·봉인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 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 이 있으면, 그 권한을 포기한 것 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남은 투표용 지 및 번호지는 제1항에 따라서 각각 봉인한다.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 *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그 자물쇠를 잠그고 잠금확 인도장을 찍는다<대안>
- * 참관하에→보는 앞에서
- *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닫는 시각에 그 입구를

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 [순화안]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 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확 인도장을 찍는다.

*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확인도장을 찍는다.

제170조(**투표함 등의 <u>송부</u>)** ①투표 | [순화안] 제170조(**투표함 등의 보냄)** 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 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 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 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넘지 못하며, 10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이 추첨에 의하여 10인을 선정한다.

①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바로 투표함과 그 열쇠, 투표록과 남은 투표용지를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②∨제1항에 따라서 투표함을 보 내려면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명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입은 경찰공 무원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 다. 다만, 투표참관인은 10명을 넘 지 못하며, 10명이 넘으면 투표관 리관이 추첨으로 10명을 선정한다.

- * 투표함<u>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u>투표용지→투표함<u>과 그 열쇠,</u> 투표록과 남은 투표용지
- * 송부하여야 한다.→보낸다.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u>인계</u>) 투표 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u>기타</u> 선거에 관한 모든 <u>서류</u> 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전** 달)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u>등</u> 선거에 관한 모든 <u>서류는</u> 관할 > 구·시·군 > 선거관 리위원회 >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 인계 [引繼][명사]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넘겨 줌'으로 순화.

→<전달>

제17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u>이를 행</u> <u>한다</u>.

②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

[순화안] 제172조**(개표관리)** ① \ 기 표사무는 구·시·군 \ 선거관리위 원회가 행한다.

② \ 제173조(개표소) \ 제2항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율에 맞게 지정·배치하되, 이법에 따른 개표관리에 관하여 해당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제13항에 따른 보조위원을 포함한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 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③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 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재 적위원(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 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 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위원장)제4항의 규 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 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반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 무는 각각 해당 위원장과 부위원 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하다.

③∨개표를 시작한 후에는 개표소 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 적위원(제173조∨제2항에 따라서 2 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 는 해당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제 13항과 같은 법 제5조(위원장)∨제 4항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선거에도 적용한다.

- * 비등하게→비율에 맞게
- *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선거에도 적용한다

제173조(**개표소)** ①구·시·군선거관 [순화안] 제173조(**개표소)** ① \lor 구· 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 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시·군의 사무 소 소재지 또는 해당 관할구역(해 당 구역 /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 으면 가까운 다른 구역을 포함한

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 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 여야 하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u>의</u>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④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 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 제3 항은 개표소에도 적용한다.

④∨2개 이상의 개표소의 개표절 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천재ㆍ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개표소의 개표절차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시·군선 | [순화안]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 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 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 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 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 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 표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개표사무 원을 두며,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 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 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제175조(**개표개시**) ②구·시·군선 [순화안] 제175조(**개표개시**) ② <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 역∨안에 둘∨이상의 선거구가 있 으면,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구·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 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 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 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 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 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 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순화안]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우편으로 보낸 부재자투표를 접수하면 해당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 여∨아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넣 어 보관한다.

② /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이 참 석하여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 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 * 투입·보관하여야 한다→넣어 보관한다
- *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개표참관인이 참여하여

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투표함을 | [순화안] 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

∨투표함을 열 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 관인이 참석하여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 長은 投票函을 開函한 후 投票數 를 計算하여 投票錄에 기재된 投 票用紙 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 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 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 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으면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 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 구 · 시 · 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연 후 투표 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적힌 투 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이 경 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늦추는 위원이 있으면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 참관→참석
- * 개함하는 때에는→열 때, 개함한 후→연 후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 [순화안]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 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 하다.

②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 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출석한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 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 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 수를 계산한다.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는 정당별 득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 계 ·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따라서 투표구 단위로 하며, 출석한 구· 시 · 군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전 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과 확인도장을 찍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 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 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 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표사무를 늦추는 위원이 있으면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후보 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 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는 보도할 수 있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 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료는 보도할 수 있다.
- * 署名・捺印하여야 한다.→서명과 확인도장을 찍는다.

第179條**(無效投票)** ①다음 각 호의|[순화안] 제179조**(무효투표)** ①V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 效로 한다.

- 1. 正規의 投票用紙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欄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
- 3. 2 이상의 欄에 標를 한 것
- 4. 어느 欄에 標를 한 것인지 識 別할 수 없는 것
- 5. 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것
- 2. 어느 란에도 표가 없는 것
- 3.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4. 어느 란에 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것
- 5. 표가 아니라 문자 또는 그림모 양을 한 것

-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7.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가 아닌 用具로 標를 한 것
- ②不在者<u>投票의 경우에는</u> 第1項<u>의</u> 規定에 의하는 <u>외에</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u>이</u> 를 無效로 한다.
- 1. 正規의 회송용 봉투<u>를 사용하</u> 지 아니한 것
- 2. 회송용 봉투가 <u>봉함되지 아니</u> 한 것
- 4.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로 申告한 <u>者가</u> 居所投票의 방법으 로 投票한 것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 1. 標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標안 이 메워진 것으로서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를 사용하여 記票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u>선 거에 있어서는</u>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u>2</u> 이상 기표된 것
-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 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4. 두 候補者欄의 區分線上에 記 票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적은 것
-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② V 부재자<u>투표는</u> 제1항<u>에 따르는</u> <u>이외에</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회송용 봉투가 <u>아닌 것</u>
- 2. 회송용 봉투가 열려진 것
- 4.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u>사람이</u> 거소투표의 방법 으로 투표한 것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 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 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u>선거는</u>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u>둘 이상</u> 기표된 것
-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 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 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5. 記票한 것이 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 가 명확한 것
- 6. 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 으나 正規의 投票用紙임이 명백 하고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7. 居所投票의 경우 이 法에 規定 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印章(拇 印을 제외한다)의 捺印・姓名記 載 등 누가 投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標 를 하였으나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 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9. 不在者申告人이 投票후 選擧日 의 投票開始전에 사망한 경우 ユ 不在者投票

- 5. 옮겨서 기표한 것이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확한 것
- 6.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 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확한 것
- 7. 거소투표에서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 장을 제외한다)찍기·성명적기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 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인지 명확한 것
-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적혀있거나 개인도장이 찍힌 것
- 9.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투 표시작∨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 * 물형 [物形][명사] 물건의 생김새 →그림모양
- * 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 *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거소가 적혀있거나 개인도 장이 찍힌 것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 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 [순화안]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 **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 ②∨투표의 효력 결정은 선거인의 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다.

- *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 *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효력 결정은

제181조(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 [순화안] 제181조(개**표참관)** ① < 구· 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 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 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 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 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 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 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 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 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 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 관인에게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 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여섯명을, 무소 속후보자는 세명을 선정하여 선거 일∨하루 전까지 해당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 참관하게 하며,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 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u>에 따른</u>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으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 낙을 얻어 열두명(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는 여섯명)에 이 <u>인</u>)에 <u>달할</u> 때까지 선정한 <u>자를</u>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 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 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u>송부</u> 된 투표함의 <u>인계·인수절차를 참</u> 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 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u>참관할</u>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 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u>마련하여야 한다</u>.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 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u>요구한 경우에</u>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이를</u>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 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

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 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를 때까지 선정한 <u>사람을</u> 개표참 관인으로 한다.

④ V 제3항<u>에 따라서</u> 구·시·군 V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 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 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V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u>보</u> <u>낸</u> 투표함의 <u>전달절차에 참석하고</u>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u>마련한다</u>.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면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⑧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구・시・군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이 개표소 또는 일반관람인석에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그밖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알려줄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에 필요하면

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 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⑪제161조(투표참관)제7항의 규정 ▮ 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 관인"으로 본다.

①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후보자별 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 여 참석하게 한다.

⑪ ∨ 제161조(투표참관) ∨ 제7항은 개표참관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⑩∨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확인하도록 한다
- *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개표관리에 필요하면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 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 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 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 [순화안] 제182조(개**표관람)** ① > 누 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정 해진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② V 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 표장소에 따라 적당한 수로 하며,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일반관람인석의 질서유지에 필 요한 설비를 한다.

* 구획된→정해진

* 개표장소를 참작하여→개표장소에 따라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 [순화안]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 유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 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 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 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 표사무원 ·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 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 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 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 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 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 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u>안에</u>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

한과 질서유지) 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V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 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 표참관인만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사 람과 방송·신문·통신의 취재・ 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 가는 것은 예외로 한다.

- ② V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 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 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 가 진행될 수 없으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 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제3항<u>에</u> 따라서 도움을 요청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 은 즉시 따라야 한다.
- ⑤∨제3항의 요청에 따라서 개표 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

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 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 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 | 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 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표소에 서 물러나야 한다.

> ⑥∨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 * 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만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 * 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람인석에 들 어가는 것은 예외로 한다
- * 출입하는 때에는→출입할 때에는
- * 양도・양여할 수 없다.→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 | [순화안]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 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 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 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 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區・市・郡 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 封印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封印을 거부 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

표가 끝나면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 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 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권한을 포 여야 한다.

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第185條(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 의 작성 등) ①區·市·郡選舉管 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 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u>에 있어서는</u>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

②第1項의 開票錄을 <u>송부받은</u>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u>지체없</u> 이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 을 <u>작성하여야</u> 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第3項의集計錄을 송부받은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別 得票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 구·시· 군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대 통령 \ 선거 및 비례대표 \ 국회의 원 \ 선거는 시·도 \ 선거관리위원 회)에 보낸다.

② V 제1항의 개표록을 받은 관할 V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는 <u>바로</u> 후보자(비례대표 V 지방의회 V 의원 선거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 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u>작성</u> 한다.

④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받으면 대통령 V 선거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 V 국회의원 V 선거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⑤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에는 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 <u>署</u> 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u>署名·捺</u>印을 거부하 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集 計錄 및 選舉錄에 그 사유를 기재 한다.

⑥開票錄・集計錄 및 選舉錄의 書 式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 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⑤ V 개표록 · 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서명하고, 확인도장을 찍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과 확인도장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으면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 · 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V 개표록 · 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으로 정한다.

- * 에 송부하여야 한다→보낸다.
- * 송부받은 때에는→받으면
- *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서명과 확인도장을 찍는다 <날인→확인도장>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 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 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

[순화안]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 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u>서류</u>,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u>서류</u>,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u>보관한다</u>. 다만,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에 따른 선거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u>제</u>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에 관한 쟁송이 <u>제기되지 않거나</u> <u>계속되지 않으면</u> 중앙선거관리위 원회∨<u>규칙에 따라</u> 보존기간을 단 축할 수 있다.

- * 기타→등
- *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 →쟁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계속되지 않으면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순화안]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

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u>자를</u>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u>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u>달하여야</u>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최고득표자가 <u>2인 이상인 때에</u>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u>통지에</u>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 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u>결정된 때에는</u>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u>된 때에는</u>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u>지체없</u>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

[순화안]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대통령 \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알린다. 다만, 후보자가 한명이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 청수의 3분의 1 이상에 이르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다.

- ② V 최고득표자가 <u>두명 이상이면</u>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u>알림에 따라서</u>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u>사람을</u>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V제1항에 따라서 당선인이 <u>결</u> 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위원 장이, 제2항에 따라서 당선인이 <u>결</u> 정되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바로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u>교부</u>한다.

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 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④∨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여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 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염려가 없으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 할 수 있다.

-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효투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알린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 [순화안] 제188조(지역구 > 국회의원 정·공고·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 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 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 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

✓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국회 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 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두명 이 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하다.

② / 후보자 / 등록마감시각에 지역 구∨국회의원∨후보자가 한명이거 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시작∨시간∨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 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u>1인</u>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u>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u>,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u>개시시각</u>부터 투표마감<u>시각까지</u> 지역구국회의원후 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 자수가 <u>1인이 된 때에는</u>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 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 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 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면,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

거나 등록이 <u>무효되어</u> 지역구∨국 회의원∨후보자수가 <u>한명이 되면</u>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u>투표없이</u>,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V 선거일의 투표시작시간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지역구 V 국회의원 V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지역구 V 국회의원 V 후보자수가 한명이 되면 나머지 투표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V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 V후 당선인결정 V전까지 지역구 V국회의원 V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개표결과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사람이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으면 그 국회의원 V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것으로 한다.

⑤ V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투표 가 없으면 해당 선거구 V 선거관리 위원회는 바로 이를 공고하고 상 급 V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하급 V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다.

⑥ V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서 국 회의원 V 지역구의 당선인이 <u>결정</u> 되면 해당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

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 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 공고·<u>통지</u>)제4항<u>의 규정은</u> 지역 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바로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 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⑦∨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 정・공고・알림)∨제4항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도 적 용한다.

- * 개시시각→시작시간
-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투표없이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 [순화안] 제189조(비례대표 > 국회의 분과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 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 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 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 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 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

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 정·공고·알림) ①∨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비례대표 / 국회의원 / 선 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다섯석 이 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 할당정당"이라 한다)에게 해당 의석 / 할당정당이 비례대표 / 국회의원 / 선거에서 얻 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 회의원 / 의석을 나눈다.

② V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 누어 산출하다.

③ ∨ 비례대표 ∨ 국회의원 ∨ 의석은

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 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u>기재된</u>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 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 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 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u>의 규정에 의한</u> 재투표 사유가 <u>발</u> 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 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 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 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각 의석 ∨ 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 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u>해당</u> 정당에 먼저 배분하 고 <u>남은</u>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 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u>해당</u> 정당 사이의 추첨<u>으로 정한다</u>.

④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V 국회의원 V 후보 자명부에 <u>적힌</u> 당선인으로 될 순위 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V 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 국회 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 국회의원 / 후보자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 표 / 국회의원 / 선거에서 제198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에 <u>따른</u> 재투표 사유가 <u>생기면</u> 그 투 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 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 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비례 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 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가 예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 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 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 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 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 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 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 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 를 준용한다.

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 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 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 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바로 각 정당에 알리며, 당선인에 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 정 · 공고 · 알림) ∨ 제4항은 비례대 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도 적용한다.

- * 배분한다→나눈다
- * 추첨에 의한다→추첨으로 정한다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 [순화안] 제190조(지역구 > 지방의회 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시· 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 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 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

✓의원 ✓ 당선인의 결정·공고·알 **림)**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는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 를 얻은 사람(지역구∨자치구ㆍ시ㆍ 군∨의원∨선거는 유효투표의 다 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의원정수 에 이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당선인으로 결

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 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 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 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 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 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 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 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 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두 🗸 명 이상이면 연장자순으로 당선인 을 결정한다.

② \ 후보자 \ 등록마감 \ 시간에 후 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 후 선거일 투표개시 / 시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 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 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 정・공고・알림)∨제4항 및 제188 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알림)∨제3항부터 제 6항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 선인의 결정 · 공고 · 알림에도 적 용한다. 다만, "지역구 /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 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 \ 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 | [순화안]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 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

회의원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 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 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 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 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 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 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 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 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 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 에게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 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 하되, 같은 단수가 있으면 그 득 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 표수가 같으면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득표비 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 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 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남은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남은의석이 있으면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 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 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 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 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 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 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 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재투표결 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받는 정당 외에 의석 \ 할당정당이 없으면 의석 \ 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남은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남은 의석이 있으면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제1항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에 따른 재투표 원인 이 발생하면 그 투표구의 선거인 수를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 수에서 뺀 다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의 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 다. 다만,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 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재투 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 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가 예 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

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 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정・공고・알림)∨제4항,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과 당선인의 결정・공고・알림)∨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 정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 > 국 회의원"은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으로 본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 [순화안]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자 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 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 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 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 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 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의 당선인의 결정·공고·알림)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알린다. 다만, 최고득표 자가 두∨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 등록마감 > 시간에 후보자 가 한∨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 감∨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까 지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 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한 ∨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 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 분의 1 이상에 이르러야 당선인으 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

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 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정・공고・알림)∨제4항 및 제188 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알림)∨제4항 및 제6 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당선인∨ 결정에도 적용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 [순화안]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 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 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 이 상실된다.
-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 선을 무효로 한다.
-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인이 제52조(등록무효)제1 항 각호의 1 또는 같은조제2항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이 발견된 때
-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 표시 · 도의원의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 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 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 **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②∨당선인이 임기시작∨전에 피 선거권이 없어지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③∨당선인이 임기시작∨전에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 당선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당 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인이 제52조(등록무효)∨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 은∨조∨제2항의 등록무효∨이유 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3. 비례대표 > 국회의원 또는 비례 대표 ∨시・도의원의 당선인이 소 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원인으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을 결정할 때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진 사람 을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 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나 2 이상 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 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 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 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 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 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 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 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 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 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 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 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 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이 소속정 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원인으로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 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에 도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 대표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 선되어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 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 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알림)∨제2항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 /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 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당선인 및 당선인의 추천정 당에 알리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 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 / 의원 및 장의 당선인 인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장에 게 알린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 통령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제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순화안] 제193조(**당선인 / 결정의 착 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 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 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 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 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 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 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및 자 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 · 도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공고・알림)∨제2항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 /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안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 1항에 따른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 역구 V 시 · 도의원 V 선거 및 자치 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 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 사를 받아야 한다.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 [순화안]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 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석의 재배분) ①제187조(대 통령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 · 공 고 · 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①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공고・알림)・제188조(지역구∨국 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알 림) · 제190조 ∨ 제1항부터 제3항 또 는 제191조(지방자치단체 장의 당 선인 결정 · 공고 · 알림)에 따른 당선인 ∨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 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 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 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89조 및 제190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국 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 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 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결정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 면 해당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회 (제187조 V 제2항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 V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바로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제189조와 제190조 \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 비례대표 \ 국회의원 \ 의석 또는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 \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원인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하다.

③ V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V국회의원 V선거 또는 비례대표 V지방의회 V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시작 V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피선거권 V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등) V제2항에따라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같은 V조 V제3항에 따라서 당선이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 V국회의원 V후보자명부 또는비례대표 V지방의회 V의원 V후보자명부에 적힌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V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V 국회의원 V 선거 또는 비

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 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 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 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 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제198조의 원인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 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 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 가 큰 순위에 따라 남은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 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서는 제190조∨제4항부터 제7항 에 따른다.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순화안]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선거를 실시한다.

-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 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 니한 때
-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 거나 사망한 때
-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 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 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유가 있으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 당선인 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 방의회∨의원정수에 이르지 못 한 때
- 3. 선거가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때
- 4. 당선인이 임기시작∨전에 사퇴 하거나 사망한 때
- 5. 당선인이 임기시작∨전에 제 192조(피선거권∨상실에 따른 당 선무효 등)∨제2항에 따라서 당

- 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 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이 무효로 된 때
-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 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 거로 본다.

- 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서 당선이 무 효가 된 때
-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에 따른 당선무효)부터 제265조(선 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가 된 때
- ② V하나의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에 따른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 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 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 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 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
- [순화안]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 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 선거와 국회의원 > 선거는 대통령, 지방의회 >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관할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한다.
 - ② V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 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어 계속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선거를 연기 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원인 등 을 공고하고, 바로 대통령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 /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각각 알린다.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 * 사유→워인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 [순화안]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 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 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 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 시가 없는 한 제44조(명부의 확정 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 하다.

③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 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

에 따른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 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 선인을 결정한다.

② V 제1항의 재선거 실시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에 도 불구하고 이미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재선거 실시에서 정 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재선거의 선거기간∨시작일로부터 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 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 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 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 구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 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 호로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 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그 다음날까지 해당 선거구 V 선거 관리위원회에 합당 V 전 후보자 V 중 한 V 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 V 국회의원 V 선거와 비례 대표 V 지방의회 V 의원선거는 하나 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V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 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추가할 수 없다.

④ V 제3항의 기간 V 안에 추천이 없으면 합당 V 전 정당의 해당 선 거구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 로 한다.

⑤ V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 표 V 국회의원 V 선거 및 비례대표 V 지방의회 V 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선거 당시의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⑥ V 제3항에 따라서 추천된 후보 자의 득표계산은 합당으로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계산 하지 않는다.

⑦ V 비례대표 V 국회의원 V 선거와 비례대표 V 시 · 도의원 V 선거에서 제1항에 따른 재선거 원인이 확정 된 경우,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해 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 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 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 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제4항 내 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 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 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부터 제4 항 또는 제190조∨제4항부터 제7 항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 회의원과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 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선거에 서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할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 정은 제194조∨제4항에 따른다.

⑨∨제1항에 따른 재선거의 선거운 동 및 선거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 [순화안] 제198조(천재·지변 등에 **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 함의 분실 · 멸실 등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 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따른 재투표) ①∨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 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해당 선 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 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 194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분 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 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 산하다.
- ④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 한 재선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 정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염려가 없으면 재투표 없이 당선 인을 결정한다.

- ③∨제1항의 재투표 실시에서 합 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 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 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 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하다.
- ④∨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에 따 른 재선거)∨제3항부터 제6항은 천 재ㆍ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에도 적용하다.
- ⑤ / 제1항에 따른 재투표의 선거운 동 및 선거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 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면 재투표 없이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 [순화안]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196조(선거의 연기)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천재ㆍ지변 등 으로 인한 재투표)제1항의 재투표 는 가능한 한 제35조(보궐선거 등

실시) 제196조(선거의 연기)∨제1 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 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 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른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 등으로 인한→등에 따른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 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u>궐원</u> 또는 궐위 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 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 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200조(보궐선거) ① V 지역구 V 국회의원·지역구 V 지방의회 V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 비례대표 \ 국회의원과 비례대 표 \ 지방의회 \ 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원알림을 받은 후 10일 안에 결원된 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 국회의원 \ 후보자명부에 적힌 순위에 따라결원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 의원인 어려울 승계할 사람을 결정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V 대통령 V 권한대행자는 대통령 이 궐위되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통보한다.
- ① V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결원 이 생기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 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 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 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 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 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 지방의회 \ 의장은 해당 지방 의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면 궐 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해당 지방의회 🗸 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워회에 알린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에 따라서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제 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원알림 이 없으면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궐위→결위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순화안]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 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 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 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

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끝날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 분의 1 이상이 결원(임기∨끝날

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 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 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 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 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219조(선거소청)제2항 또는 제 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 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 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 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 ✓원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어 보궐선 거 등을 실시하려면 결원된 의원 전원으로 실시한다.

② V 제219조(선거소청) V 제2항 또는 제223조(당선소송)에 따라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V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않는다.

③ V지방의회 V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선거구의 구역이 지방의회 V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선거구의 구역으로한다.

④ \ \ 보궐선거 등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제1항 앞부분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으려면 보궐선거 등의 실시원인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뜻을 공고하 고, 국회의원 \ 보궐선거 등은 대 통령이 관할 \ 선거구 \ 선거관리위 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보궐선거 등은 관할 \ 선거구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 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선거 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 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 로 본다.

⑥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재선 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연 기된 선거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 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제 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 하여는 제158조(부재자투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 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 표자의 예에 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알린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의 실시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⑤ / 제1항 뒷부분에 따라서 보궐 선거 / 등을 실시하려면 관할 /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 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⑥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재선 거)에 따른 재선거 및 연기된 선 거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항에 따라서 임기 < 끝남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 하는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는 제158조(부재 자투표)∨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 구하고 같은∨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 [순화안]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

간) ①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 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 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와 선거기간) ① ∨ 이 법에서 "동 시선거"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 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둘 이 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 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V 동시선거에서 선거기간 및 선 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르면 이 법 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 [순화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

①任期滿了日이 같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는 <u>그 任期滿了에 의한</u> 選舉의 選舉日에 동시실시한다.

②第35條(補闕選舉 등의 選舉日)第 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補闕選舉 등이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에 동시실 시한다.

-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 期間중에 그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있는 補 闕選舉 등
-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 의 選舉日후에 해당되나 그 選 擧의 실시사유가 任期滿了에 의 한 選舉의 選舉日 30日전까지

순화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 끝날 날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면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 거기간∨중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끝날 날이 있는 보 궐선거 등
-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끝날 날이 임기 \ 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후에 해당되나 선거의 실시원인이 임기 \ 끝남 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30일 \

확정된 補闕選舉 등

③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 한 補闕選擧 등 가운데 다음 各號 의 補闕選舉 등은 任期滿了에 의 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 실시한 다. 다만, 그 補闕選擧 등의 選擧 日이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 에 의한 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舉日후 50日까지의 사 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任期滿了 에 의한 選舉의 選擧日부터 50일 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補闕選擧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 選擧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 전 30日까지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도 동시에 실 시하다.

- 1.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 期間開始日전 40日내에 選舉日 이 있는 補闕選舉 등
- 2.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 日전 30日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舉 등. 이 경우 당 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 舉日전 30日후에 그 選舉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舉 등은 그 다음의 補闕選舉 등의 選舉 日에 실시한다.

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에 관한 사 항은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 장의 임기∨끝남에 따른 선 거의 선거기간∨시작일∨전 40일 부터 선거일 \ 후 50일까지의 사이 에 있으면 해당 임기 / 끝남에 따 른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 (이하 이 조에서 "연기된 보궐선 거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연 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 일까지 선거의 실시원인이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 1.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 거기간∨시작일∨전 40일∨안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 거일∨전 30일까지 실시원인이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해 당 임기∨끝남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 의 실시원인이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 *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임기∨끝남에 따른 선거

第204條**(選擧人名簿에 관한 特例)**|[순화안]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

-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選擧人名簿 와 不在者申告人名簿는 第44條(名 簿의 확정과 효력)의 規定에 불구 하고 하나의 選舉人名簿와 不在者 申告人名簿에 의한다.
- ③同時選舉에 사용할 選舉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表紙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한 특례) ① > 동시선거에서 선거 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 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에도 불 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 자∨신고인명부에 따른다.
-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 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으로 정한다.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순화안]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 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 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같은 政 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 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舉事務所와 選舉連絡所를 공동 으로 設置할 수 있다.

-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는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공동으로 選任할 수 있다.
-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그 設置 또는 選任은 候補者가 각각 設 置・選任한 것으로 보며, 그 設 |

- 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서 같 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두∨명 이 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 천을 받은 두∨명 이상의 후보자 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또 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 치 · 선임한 것으로 보며, 설치 ·

置・選任申告書에 그 사실을 명시 하여야 하고 共同設置・選任에 따 른 費用은 당해 候補者간의 약정 에 의하여 分擔할 수 있되, 그 分 擔內譯을 設置・選任申告書에 명 시하여야 한다.

④候補者는 다른 選舉의 候補者의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選舉 事務員 또는 會計責任者가 될 수 없다.

⑤選舉事務所・選舉連絡所의 共同 設置와 選舉事務關係者의 共同選 任에 따른 設置・選任申告 및 身 分證明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 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야 하고 공동설치·선임에 따른 비용은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 내역을 설치·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V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 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의 공 동설치와 선거사무 \ 관계자의 공 동선임에 따른 설치 · 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으로 정한다. 제206조(선전벽보에 관한 특례) 제 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 를 실시하는 때의 선전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순화안] 제206조(선전벽보에 관한특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선거일) V제1항에 따라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전벽보의매수는 두 V개의 선거를 동시에실시하면 제64조(선전벽보) V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실 시하면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상당하는 수로 한다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 例)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 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 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 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 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 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 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管轄區域이 큰 選擧區의 候補者 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紙面 에 작은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을 選擧區에 따라 달리 게재 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

[순화안]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 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두∨명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 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제65조(선거공보)에 따른 책 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 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 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 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 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실 른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

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 種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 우에는 候補者間의 약정에 의하여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分擔內譯을 管轄區・市・郡 | 選擧管理委員會에 책자형 선거공 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書面으 로 申告하여야 한다.

우 큰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 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책자형 선거공보 1종으로 본다.

> ③∨제1항에 따라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간의 약정으로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내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 각각 서면으로 신고한다.

- * 큰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 種으로 본다
 -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책자형 선거공보 1종으로 본다.

第20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 [순화안] 제209조(공개장소의 연설・ 談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후보자 • 연설원 또는 사회 자는 한 場所에서 第79條(公開場 所에서의 演説・對談)의 規定에 의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두∨명 이상의 후보자 • 연설원 또는 사회 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공개장 소의 연설·대담)에 따른 공개장 소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 [순화안]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 시선거에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

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 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 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 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보궐선 거 등의 선거일)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연기된 선거 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 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 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 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 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는 정당활동 규제의 적용에 있어 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 시하는 선거의 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며, 임 기 끝남에 따른 선거와 제35조(보 궐선거 등의 선거일)∨제2항과 제 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연 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 끝남에 따른 선거를 기준으 로 하고, 제35조∨제2항과 제3항 에 따른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 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원인 이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 는 보궐선거 등에 관한 사항 중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원인이 확 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원인이 확정된 때"로 본다.

第211條(投票用紙・投票案內文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投票用紙는 色度 또는 紙質 등을 달리하는 등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舉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수 있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 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 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순화안]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 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V 동시선 거에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 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V 규칙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③ V 동시선거에서 시·도지사 V 선 거 및 비례대표 V 시·도의원 V 선 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 지와 투표함의 작성) V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 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 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 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同時選舉에 있어서 投票案內文 은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舉管理委 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 나의 投票案內文으로 할 수 있다. ⑤同時選舉에 있어서 投票所의 數・ 設置・設備와 投票用紙의 작성・ 交付者와 교부방법 및 投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에 따라 해당 시·도 V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해당 시·도 V 선거관리위원회의 푸른색 도장을 찍어 인쇄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V 동시선거에서 투표안내문은 제 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할 수 있다.

⑤ V 동시선거에서 투표소의 수 · 설치 · 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 · 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V 규칙으로 정한다.

- *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푸른색 도장을 찍어 인쇄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第212條**(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舉에 있어서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 및 회송은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1項 및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의 規定의 범위안에서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행할 수 있다.

[순화안] 제212조(부재자 V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부재자 V 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부재자 V 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V제1항 및 제158조(부재자투표) V 제1항의 범위 V 안에서 부재자 V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마다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 投票參觀人은 第161條(投票參觀)第 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 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 ③同時選舉에 있어서 不在者投票 參觀人은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 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 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 ④同時選舉에 있어서 不在者投票 參觀人은 12人 이내로 하되,第3 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管 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 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 정·申告한 者중에서 12人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 員數가 12人을 넘는 때에는 第150 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

- [순화안]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동시선 거의 투표참관인은 제161조(투표 참관) > 제2항에 따른 선정·신고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 후보자마다 두 > 명을 선정·신고한다.
 - ② V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 지정에서 제161조 V 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 ③ V 동시선거에서 부재자 V 투표참 관인은 제162조(부재자 V 투표참관) V 제2항에 따른 선정·신고인원수 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에 참여 한 정당마다 두 V 명을, 무소속 V 후 보자는 한 V 명을 선정·신고한다.
 - ④ V 동시선거에서 부재자 V 투표참 관인은 12명 이내로 하며, 제3항에 따라서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으면 관할 V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사람을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 V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사람 V중에서 12명에 이를 때까지추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으면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V 제3항과

載順位 등)第3項 및 第4項의 規定 에 의한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 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12人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제4항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 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사람부터 12명에 이를 때까지 지정한다.

* 달할→이를

第214條(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 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제175조(개 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 順序는 選舉別 또는 그 選舉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擧區別로 구분 하여 행한다.

[순화안] 제214조**(투표함의 열기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제175조 (개표시작)∨제2항에 따른 개표순 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 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 여 행한다.

* 개함→열기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 [순화안]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 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 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 票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 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 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 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관한 특례) ① V 동시선거에서 개표 참관인은 제181조(개표참관)∨제2항 에 따른 선정 · 신고인원수에도 불 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명을, 무소속 / 후보자는 두 / 명을 선정 · 신고한다. 다만,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 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사람∨중에서 정당은 4명씩을, 무소속∨후보자는 한∨명씩을 참관하게 한다.

②同時選舉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 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 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 枚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② > 동시선거에서 관람증의 매수 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로 균등 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한다.

第216條(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 | [순화안]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에 관한 特例) ①4개 이상 同時選 擧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 원선거의 候補者는 第79條(公開場 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 談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 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 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 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 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 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 · 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지역구∨자치 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 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임기 끝남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 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 원 중에서 지정한 한∨명에게 자 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어 각각 확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 · 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 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 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③임기만료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를 동시 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 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 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3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는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찍어 각각 확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한〉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및 시·도지사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한〉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물러나야 한다.

③ V임기 V끝남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 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 V제1항·제2항 및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읍·면· 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V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 이외 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 3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 으로 정한다.

*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개인도장을 찍어 각각 확인하여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 錄 및 開票錄은 選擧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 각 작성할 수 있다.

第217條(投票錄・開票錄 등 작성에|[순화안] 제217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의 투 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 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第219條(選舉訴請) ①地方議會議員 및 |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 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 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 서 같다) 또는 候補者는 選舉日부 터 14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 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舉、自治 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 道選舉管理委員會에、比例代表市・ 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 請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 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 는 候補者는 常選人決定日早日 14 日 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 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舉權喪失 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순화안] 제219조**(선거소청)** ① V 지 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 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 /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지역 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 의 장 선거는 시ㆍ도∨선거관리위 원회, 비례대표 V 시·도의원 V 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 지방의회 \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 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안 에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 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 에 따른 당선무효 등)∨제1항부터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舉,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와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당해 選舉區 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關位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 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같은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關位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關位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關位된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5)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3항의 원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 제190조(지역 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공고· 알림)부터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결정· 공고· 알림)에 따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수있다.

③ V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피소 청인이 될 해당 선거구 V 선거관리 위원회 V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회 V 위 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① V제2항에 따라서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 나, 제192조 V제2항에 따라서 당 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V 조 V제3항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 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V선거 관리위원회 V위원장, 해당 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 V위원장이 궐위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V선거관리 위원회 V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 로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후 記 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訴 請狀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 副 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 2. 被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 3. 訴請의 趣旨 및 이유
- 4. 訴請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5. 代理人 또는 選定代表者가 있 는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所
-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狀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訴請狀 副本을 常事者에게 송달하 여야 하다.
-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狀 副本을 송달받은 被訴請人은 中央 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舉 管理委員會가 지정한 期日까지 答 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 하여야 하며, 答辯書를 접수한 中 央選舉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 學管理委員會는 그 副本을 當事者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訴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되, 다│ 서면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적은 후 소청인의 이름을 적 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 하는 부본을 붙여야 한다.

-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 으면 그 성명과 주소
- ⑥∨제5항에 따른 소청장을 접수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 도 V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소청 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보낸다.
- ⑦∨제6항에 따라서 소청장 부본 을 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시・도 > 선거관리위 원회가 지정한 날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수와 같은 부본을 붙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또는 시·도 V 선거관리위원회 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보낸다.
- * 기재한 후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적은 후 소청인의 이름을 적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 * 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수와 같은 부본을 붙여야 하며

-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219 | [순화안]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조(선거소청)제1항 또는 같은조제2 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 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 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3. 주문
 - 4. 소청의 취지
 - 5. 이유
 - 6. 결정한 날짜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 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 · 피 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다.
 -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 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①∨제219조(선거소청)∨제1항 또 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 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 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청에 대해 결정한다.
 - ② /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3. 주문(主文)
 - 4. 소청의 취지
 - 5. 이유
 - 6. 결정한 날짜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제2항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 · 피소청 인 및 참가인에게 보내며, 그 결 정요지를 공고한다.
-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 3항에 따라 보내진 때에 효력이 생긴다.
-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제3항에 따라 보내진 때에

第221條(『행정심판법』의 準用) ①選 擧訴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 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第7條(委員의 除斥・기괴・回避)(第 2項 後段을 제외한다), 第11條(選 定代表者), 第13條(被請求人의 適 格 및 更正)第2項 내지 第5項, 第 14條(代理人의 選任), 第15條(代表 者 등의 資格), 第16條(審判參加), 第20條(請求의 變更), 第21條(執行 停止)第1項,第23條(補正),第25條 (主張의 補充), 第26條(審理의 方 式), 第27條(證據書類 등의 제출), 第28條(證據調查), 第29條(節次의 併合 또는 分離), 第30條(請求 등 의 취하), 第32條(裁決의 구분)第1 項・第2項、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 지), 第40條(證據書類 등의 반환)ㆍ 第41條(書類의 송달) 및 第44條(權 限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하고, 選 學訴請費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을 準用하되, "행정심판법 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 "選 學訴請"으로, "請求人"은 "訴請人" 으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 로, "審判請求 또는 審判"은 "訴 請"으로、"審判請求書"는"訴請狀" 으로, "裁決"은 "決定"으로, "裁決 期間"은 "決定期間"으로、"委員會 또는 裁決廳"은 "中央選擧管理委員

[순화안]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 용) ①∨선거소청은 이 법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 2항 뒷부분을 제외한다), 제11조 (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 격 및 <u>변경</u>)제2항부터 제5항, 제14 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 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 지)∨제1항, 제23조(보완), 제25조 (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 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 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 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 제41 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를 따르고, 선거소청∨비용은 "민사소송법」을 따르되, "행정심 판법』을 따르는 경우 "행정심판" 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 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 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 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 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 회 또는 재결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

會 또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로, "裁決書"는 "決定書"로 본다.

②<u>訴請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u> <u>항</u>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② V <u>소청 등에 필요한 사항</u>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V 규칙으로 정한다.

- * 경정(更正)→변경, 보정(補正)→보완
- * 訴請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소청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 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 인 ·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 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 력에 관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 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 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 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 내에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 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

[순화안] 제222조(선거소송) ① V 대통령 V 선거와 국회의원 V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선거구 V 선거관리위원회 V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지방의회 \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 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구 \ 선거관리 위원회 \ 위원장을 피고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 220조 \ 제1항의 기간 \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안에 비례대표 \ 시·도 의원 \ 선거 및 시·도지사 \ 선거는 대법원, 지역구 \ 시·도의원 \ 선거, 자치구·시·군 \ 의원선거 및

시 · 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 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 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피고 가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第223條(當選訴訟) ①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 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 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 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 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 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 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 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 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 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 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 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

[순화안] 제223조**(당선소송)** ①∨대 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로 부터 30일 ∨ 안에 제52조(등록무효) ∨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 선거권 🗸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등) ∨제1항부터 제3항의 원인을 이유 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알림)∨제1항·제2항, 제188조(지 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 공고・알림)∨제1항부터 제4항, 제 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 알림)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 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 < 지방의회 < 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에 따른 결정의 위 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

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 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 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 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 력에 관한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 人 또는 営選人인 被訴請人[第219 條(選擧訴請)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 長이 被訴請人인 경우에는 當選人 을 포함한다]은 當選人(第219條第2 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 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島 말한다)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 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第 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 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 議員選舉、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 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 員 全員을, 國會議長이 關位된 때

∨선거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지방의회 \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 에 관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 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 (선거소청)∨제2항 뒷부분에 따라 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이 피소청인인 경우,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219조∨제2 항 뒷부분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그 결 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안에 결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로부터 10일 안에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 거는 대법원,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V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 V선거관리위원회 V위원전원,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Ⅳ. 공직선거법 순화안

에는 副議長중 1人을 被告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 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 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大統領選 擧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을, 國 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 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는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 로 하다.

부의장∨중 한∨명을 피고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피고 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에 따라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 항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에는 대통령∨선거는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 선거 · 지방의회 ∨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관 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하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 [순화안]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 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 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 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 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 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도 선 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 정해야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 거나 판결한다.

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 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 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 | [순화안]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 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 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 * "소송에 있어서는" : 불필요한 표현의 중복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 절함.
- * 수소법원→소담당법원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①이 [순화안] 제226조(소송 등의 알림) ①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 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 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 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 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 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이 장에 따라서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않게 되 거나 결정된 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또는 시・도 > 선거관리위원 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회 및 관할 > 선거구 > 선거관리위 원회에 알린다.

② V 이 장에 따라서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 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다.

第227條("행정소송법」의 準用 등) 選 | [순화안]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 擧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

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은 이 법

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 소송법』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 第26條(職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 다. 다만, 같은 法 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 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 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 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 의 포기 · 인낙조서의 효력), 제225 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 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 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 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 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 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 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 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 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 (불요증사실)의 規定을 제외한다.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소 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따르는 "민사소송법』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 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 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 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 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 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 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 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 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 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는 제외한다.

제228조(증거조사)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 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 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 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 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 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순화안] 제228조(중거조사) ①∨정 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 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 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중 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 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 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 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 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선거소 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 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 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 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 면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 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 V 선 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 의 신청에 따라서 관여법관이 참 석하여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 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선거 소청)에 따른 소청의 제기가 없거 나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 (당선소송)에 따른 소의 제기가 없 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 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위 탁할 수 있다.

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 | 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 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 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선 [순화안] 제229조(**인지붙임에 관한 특** 례) 선거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 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소송서류에 붙이는 인지는 『민 사소송 등 인지법 에 규정된 금액 의 10배로 한다.

* 첩부→붙임, 첩부하여야 할 인지→붙이는 인지